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스포츠 시사성 탐구 연구

2017. 11

책임연구자: 조현주 (한국스포츠개발원) 공동연구자: 김미숙 (한국스포츠개발원) 노용구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미옥 (한국스포츠개발원) 정현우 (한국스포츠개발원) 최준규 (한국스포츠개발원)



발 간 사

세계경제포럼인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하였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연구 및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지난 30여년의 역사 동안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분야 연구 및 지원을 시작으로 체육정책개발 및 지원, 스포츠산업 생태계 선순환구조 정착 기반 구축 연구 및 지원을 통해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역시 대한민국 체육 발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성과인 기본연구 27건과 수탁연구 60건의 결과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수행한 각종 연구 성과물은 체육정책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경기력향상 분야에서 특화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선순환구조 정착의 밑거름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체육정책 분야 중장기 아젠다 발굴 및 확장으로, 엘리트선수 경기력향상 지원 노하우의 대국민서비스 확대로, 스포츠산업생태계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체육분야 역시 그에 따른 변화와 혁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묵묵히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들과 외부 공동연구자 및 지원인력, 내부 행정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한국스포츠개발원은 더욱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원장 박 영 옥

초 록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왔으며 리우 선언 이후 10주년 마다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결의를 갱신해왔다.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의 제정과 5개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면서 각 국은 자국의 정책 틀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수립이 맞물리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스포츠영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국가의 4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기존의 스포츠관련 정책적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스포츠관련 정책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맞추어 향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별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있어 스포츠를 활용하는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 정책 발굴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스포츠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가 정책으로의 반영과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발전이라는 두 개의 흐름을 따라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가 정책으로의 반영은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요 선진국(영국, 캐나다, 스위스)들이지속가능발전 의제,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이를 자국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제교류협력의 맥락에서 스포츠의 발전, 특히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해외사례와 스포츠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내 정책 틀에 반영하는 방식과 그 이행을 위해 스포츠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 틀에 반영하는 방식을 보면, 자국의 기존 지

속가능발전 계획 또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캐나다와 스위스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접근 방식에서는 상기 두 해외 사례와 유사하지만 계획체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유추되었다. 또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차원에서부터 스포츠정책이 부재함을 재확인할수 있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강하지 않지만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스위스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반영하는 접근법이 캐나다, 스위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영정도가 미약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영역인 체육영역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은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무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서볼 때 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스포츠를 활용한 정책이 거의 없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으로서 적합한 스포츠정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는 제3차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이행하기 위해 스포츠를 연계한 정책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부처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권고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 개발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IOC가 제시한 6개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 안에 반영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통해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을 개발하여 예시로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개별 국가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하는 과정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의 시사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때문에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영역에 따라 발굴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추후 본 연구에서 도출, 제시한 시사점 및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정책의 발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CONTENTS

제1장 사	ᅥ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기	지속가능발전'논의의 발전과 스포츠의 연계 시사성	·· 7
제1절	리우 선언(의제21)	11
제2절	요하네스버그 선언	17
제3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5
제4절	지속가능발전 연계 스포츠 시사성	37
제3장 유	우엔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정책 반영 해외 사례	45
제1절	문헌고찰	47
제2절	영국	48
제3절	캐나다	52
제4절	스위스	58
제5절	해외 사례 비교 분석	62
제6절	해외 사례와 한국의 비교 및 시사점	66
제4장 지	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정책 제언	71
제1절	예시사업 1: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73
제2절	예시사업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75
제3절	예시사업 3: 스포츠 ODA를 통한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 강화	77
제4절	예시사업 4: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81
제5장 결	^{결론} ·······	83
제1절	요약 및 결론	8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7
<u>참고</u> 문헌		9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스포츠 시사성 탐구 연구

표 목차

〈표 1-1〉전문가 자문 대상자····································
〈표 2-1〉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 및 국내 주요 경과 ···································
〈표 2-2〉의제21 국가실천계획이 제시한 과제와 참여부문14
〈표 2-3〉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부 실행계획
〈표 2-4〉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지표체계22
〈표 2-5〉지속가능발전법 연혁 ······23
〈표 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연혁 ······23
〈표 2-7〉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교 27
〈표 2-8〉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성요소28
〈표 2-9〉유엔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29
〈표 2-10〉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 36
〈표 2-11〉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에 있어서 스포츠의 공헌39
〈표 2-12〉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서 스포츠가 가능한 공헌41
〈표 2-13〉 IOC가 제시한 스포츠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43
〈표 3-1〉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47
〈표 3-2〉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 초안 목표와 연관 SDGs ···· 55
〈표 3-3〉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 최종본 목표 및 연관 SDGs 56
〈표 3-4〉스위스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 실행영역과 연관 SDGs ·······62
〈표 3-5〉각 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문서와 SDGs의 반영 비교63
〈표 3-6〉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장기목표와 연관 SDGs ····································
〈표 3-7〉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행과제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1-1〉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국내 스포츠정책 반영 흐름도
〈그림 2-1〉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 및 국내 주요 경과11
〈그림 2-2〉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체계도
〈그림 2-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도(2006년 시점) 20
〈그림 2-4〉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목표 및 체계21
〈그림 2-5〉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비전체계 25
〈그림 2-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체계35
〈그림 3-1〉영국정부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49
〈그림 3-2〉영국 국제개발부의 의제 2030(Agenda 2030) 보고서 구성51
〈그림 3-3〉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여론수렴 웹페이지(www.letstalksustainability.ca) ···· 53
〈그림 3-4〉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체계도
〈그림 3-5〉 스위스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 구성60
〈그림 5-1〉6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 정책 발굴 개념도8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개념과 활용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

지속가능발전 이슈는 국제적으로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들이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면서, 법적 구속력과는 별개로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세부정책지침으로 간주되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국제사회 실천행동을 평가하였고, 향후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면서 국가별 정책반영을 본격화하게 하였다. 2012년 '리우+20정상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작금의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천명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도구로 녹색경제가 제시되고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글로벌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2000년 6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후속조치로 2000년 9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10월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발전기본법은 지속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었다. 2011년 8월에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 분야의 4대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 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의 4개 영역에서 14개 전략, 46개의 이행과제를 발굴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가 선정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정책 환경은 국가 정책의 수립에 있어 각 영역별 전략의 수립과 전략에 따른 이행과제의 발굴에 있어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요구한다.

따라서 스포츠영역의 경우 전략적으로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의 4대 목표를 달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스포츠 관련 정책적 수요를 충족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관부처별 추진과제 현황 중 문체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산업 추진, 생태관광 저변확대 및 다변화과제로 역할이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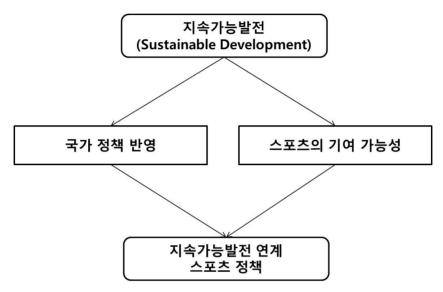
본 연구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맞추어 향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시사성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별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에 있어 스포츠를 활용하는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 정책발굴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로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스포츠 정책의 예시를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가 정책에 반영과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발전이라는 두 개의 흐름을 따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가 정책에 반영은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하고 이를 이행하기위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속가능발전 의제,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Gs)의 이행을 위해 이를 자국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교류협력의 맥락에서 스포츠의 발전, 특히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각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개별 국가들의 자국 정책 환경 안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반영되는지에 대 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이행에 있어서 스포츠의 유효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스포츠를 정 책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그림 1-1〉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국내 스포츠정책 반영 흐름도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발달 과정을 연대기적 기술로 살펴보기 위해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발간물들을 고찰하였으며, 국제적 논의와 더불어 국 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국가발간자료, 연구저널, 국가기록들을 수집,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개별 국가의 스포츠 정책에 반영되는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관련 문헌을 검색하여 검색된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각국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기위한 사례연구를 위해 영국, 캐나다, 스위스 3개국을 선정하여 각 국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보고서 등 국가발간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영국, 캐나다, 스위스 3개국을 해외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이 합의되는 것을 전후하여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인 나라들이며,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 생산된 문서에 취득과 해독의 측면에서 접근이 유용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문헌고찰과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국내 스포츠 정책 반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과정에서 스포츠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스포츠 정책 예시를 개발하였다. 스포츠 정책 예시 개발을 위한전문가는 국제학, 경영학, 교육학, 여성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스포츠와 연관된연구 경력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들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문위원의 내역은다음 표와 같으며, 자문의뢰 단계에서 동의한 대로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 대상자

순번	이름	전문분야	직업	연구경력
1	A	국제관계	교수	10년이상
2	В	여성	교수	20년 이상
3	С	국제관계	교수	10년 이상
4	D	환경, 경제	교수	10년 이상
5	E	교육	연구원	5년 이상
6	F	경영, 창업	교수	20년 이상
7	G	여성	교수	15년 이상
8	Н	스포츠, 경영	교수	5년 이상

제2장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발전과 스포츠의 연계 시사성

제1절 리우 선언(의제21)

제2절 요하네스버그 선언

제3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4절 지속가능발전 연계 스포츠 시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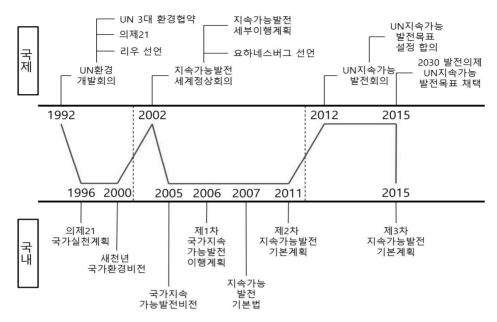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주요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한 지구적 논의가 본격화 한 것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정부의 정책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 상회의가 열린 후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아래 표는 199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와 국내의 정책 대응 동향을 보여주며, 그림은 이를 시계열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보면 10년 단위로 열린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주요 회의에 대응하여 국내 정책개발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확장,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유엔의 주요 결의, 선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의 관련 동향을 주요 사건 중심으로 리뷰 하고자 한다.

〈표 2-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 및 국내 주요 경과

국제사회	연도	국내
UN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 의제21 채택 - UN 3대 환경협약 출범	1992	
	1996	의제21 국가실천계획수립, 시행
	2000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 지속가능발전 세부 이행계획 합의	2002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2006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2006- 2010)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선정
	200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 으로 개정 -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2011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1 - 201 5) 수립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개념 설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	2012	
제70차 UN 총회 - 2030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2015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 - 2035) 수립



〈그림 2-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 및 국내 주요 경과

제1절 리우 선언(의제21)

1.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 pment: UNCED)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지구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은 스톡홀름선언이라고도 불리며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채택한 최초의 선언으로서 지구적 환경보호 논의의 토대가 되었다.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린지 20년이 지난 1972년 유엔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열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각국의 정부들이 경제 개발을 추구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로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린다. 이 회의에는 172개국이 참가, 108명의 정부수반이 참석하였으며, 약 2.400명의 비정부기구(NGOs)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2주간의 회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회의 마지막 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개발과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에 대한 지구적 합의를 공식화한 '의제 21(Ag enda 21)'을 도입하였다. 리우 선언은 환경을 보전하며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한 27개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으로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선 언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리우 선언은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었으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가 논의되고, 유엔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설립하는 등 현저한 파급효과가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결과 유엔 3대 환경협약이라고 불리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이 체결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태계와 생물종, 그리고 그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개발을 추구하는 협약이다. 1992년 6월 5일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이 시작되어 이듬해 6월 4일까지 1년 간 서명을 받은 이 협약에는 168개 국가 및 단체가 서명하였으며 1993년 12월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 인간에 의한 배출이 많은 탄산가스의 배출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되었으며 19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추후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 ment)'로 이어지는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시초가 되었다.

사막화방지협약은 공식명칭인 '심각한 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 /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한 개발의 결과로 사막화가 초래되는 국가들에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6년 발효되었다.

2. 리우 선언(의제21) 이후 국내 동향

가.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수립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 선언을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인 의제 21을 도입된 바 있다. 총 40장으로 구성된 의제 21의 제 37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실천의 일환으로 각 국가들이 의제 21을 실천할 내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국제적 공조를 위한 필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 n Sustainable Development: CSD)를 산하에 설치함으로서 의제 21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차별 평가계획을 결정하고 각 회원국에 의제 21 이행에 관한 국가차원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는 의제 21 제37장의 권고에 따라 1996년 환경부 주 관으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게 된다.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은 리우 선언 및 의제 21에 의거하여 향후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침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하는 실질적인 계획서이다. 이와 더불어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채택된 환경문제와 관련한 여러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은 제1장과 제23장의 전문을 포함하여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부터 제22장까지는 21개의 과제와 그에 대응하는 계획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제24장부터 제40장까지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참여가필요한 사회 각계 및 각 부문과 그들의 계획분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의제 21의 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이 의제 21의 틀에 맞춘 실제적인 실천계획서의 성격임을 보여준다. 각 계획분야는 계획분야가 제시된 배경,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기술되어 있다.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에 제시된 21개 과제와 17개 참여 부문,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계획분야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2〉의제21 국가실천계획이 제시한 과제와 참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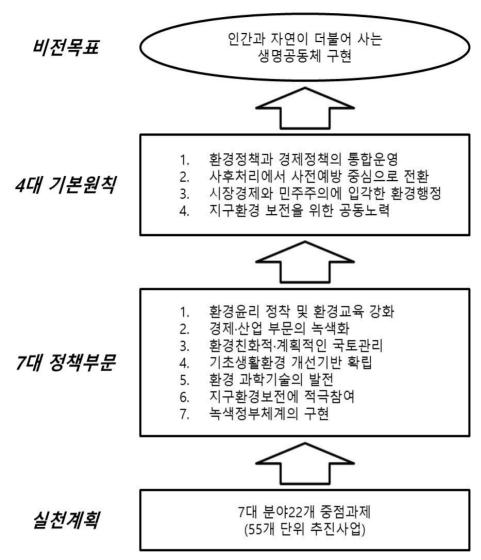
장	과제 및 참여 부문	계획분야 수
2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4
3	빈곤퇴치	1
4	소비형태의 전환	3
5	동태적 인간문제와 지속가능성	3
6	인간보건의 보호증진	4
7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8
8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2
9	대기보전	9
10	토지자원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	3
11	산림황폐 방지	6
12	사막화 및 한발퇴치	2
13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3
14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4
15	생물다양성보전	7
16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5
17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6
18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	4
19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6
20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5
21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3
22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2
24	지속적 균형발전을 향한 여성활동	6
2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4
26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강화	5
27	민간단체의 역할강화	3
28	지방정부의 역할	6
29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4
30	산업계	2
31	과학기술계	2
32	농민의 역할강화	1
33	재원 및 재정체계	4
34	기술 이전·협력과 능력배양	6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4
36	교육, 홍보 및 훈련	3
37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체계와 국제협력	2
38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	1
39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1
40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1

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세계사회에서는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자성과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에대한 논의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세계사회의 요구는 한국의 정책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촉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0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천명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였다.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은 한국의 국가정 책을 생태 중심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은 환경정책에 있어서 4가지 기본원칙과 이러한 기본원칙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7대 정책부문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 여 이에 대응하는 7개 분야 55개 단위 추진사업을 담았다.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4대 기본원칙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운영',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행정',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7대 정책분야 과제는 '환경윤리정착 및 환경교육 강화', '경제산업 부분의 녹색화', '환경친화작계획적인 국토관리', '기초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환경 과학기술의 발전', '지구환경보전에 적극참여', 그리고 '녹색정부체계의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체계도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은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국에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D)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한국에서도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에서 NC SD의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2000년 세계환경의 날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발표와 함께 한국정부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지속가 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를

천명하였다. 같은 해 8월 5일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16,946호로 공포되었고, 이에 근거해 9월 20일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3명, 위촉위원 20명 등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해 고려해야할 주요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물·국토·자연, 에너지·산업, 사회·건강 등 주요 정책수립, 의제 21의 실천 계획 수립 및 시행,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 및 대응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관련 대통령 자문등의 기능을 주요 과업으로 하였다.

제2절 요하네스버그 선언

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2002년 유엔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린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 21'이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하였다. '지구정상회의 2002(Earth Summit 2002)'라고도 불리는이 세계정상회의는 앞선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열린다는의미에서 '리우+10(Rio+10)'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의추진으로 열린 이 회의에는 17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부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 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요하네스버그 선언'은 리우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의제 21'의 지속적이고 완벽한 실행을 천명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은 선언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부 이행계획'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제 21'의 지금까지의 이행상황과 그 이행을 통해 새롭게 대두된 이슈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앞으로 달성해야할 목표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문을 시작으로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빈곤, 환경 등의 의제가 담겨있으며, 제8장과 제9장은 아프리카를 위시하여 지역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제10장에는 실행 수단에 대한 내용이, 제11장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

이 언급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부 이행계획'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부 실행계획

장		че			
1	Intr	oduction			
2	Pov	erty eradication			
3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4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5	Sust	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6	Hea	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_ 7	Sust	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8	Sust	ainable development for Africa			
9	Oth	er regional initiatives			
	A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В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С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est Asia region			
	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ion			
10	Mea	ans of implementation			
11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Objectives				
	B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С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D	Role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 Role and fuction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F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G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 evel				
	H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				
	I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환경, 보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다자주의가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앞서 2000년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합의한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의 접목을 명문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촉구하여 2005년 발효되는데 일조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2. 요하네스버그 선언 이후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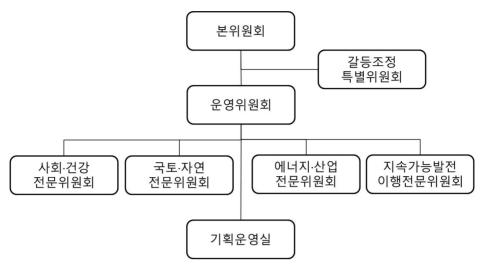
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와 그 결과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부 이행계획'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국제사회의 당면과제로 재확인되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발맞춰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2005년 제10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선언으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공포하였다.

이 비전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의 세 축을 공고히 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통해 선언된 다섯 가지 비전은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 구축', '10년 내 국민 생활환경의 선진국 수준 개선',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 정착', '환경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 동참',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이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 선언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을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축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롭게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강화 및 개편

2000년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3년 위원회 기능강화 및 기구개편을 위한 두 차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로 기능이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2003년 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 기능이 추가되어 2006년에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가 위원회조직 내에 출범하였다. 2006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조는 아래 그림의조직도와 같다.



〈그림 2-3〉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도(2006년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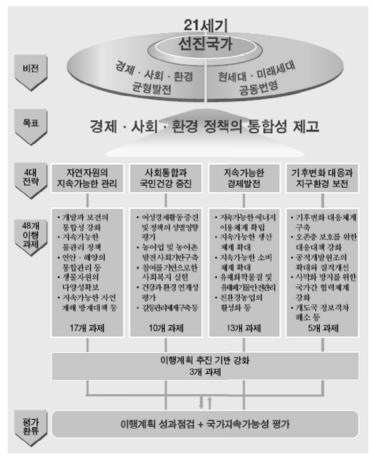
각 조직의 기능과 구성을 보면, 본위원회의 경우, 주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며, 정부위원 12명과 위촉위원으로 35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통력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및의결을 담당하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광역지자체장과 시도별 시민단체 추천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2인의 지역대표와 본위원회 위촉위원인 직능대표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사회·건강, 국토·자연, 에너지·산업, 지속가능발전이행의 4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전문위원회들은 해당 분야의 정책과제 발굴 및 검토, 연구를 수행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06 - 2010)' 수립

2005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이 선언된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의 후속작업으로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수립한다. 14개 부처 주관으로 22개 정부부처가참여하여 작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개년 전략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후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름으로 2차(2011년-2015년), 3차(2016년-2035년) 전략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완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2006년 10월 지속가능위원회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수립되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5대 핵심정책분야, 48개 이행과제, 22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또한 설정되어 이를 통해 지속적인 평가, 수정, 발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담긴 바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4대 전략과 이에 속한 45개 이행과제를 수립 하였으며 이행계획의 추진 기반 강화라는 정책분야에 3개 이행과제가 포함되어 있 다. 이행계획의 목표 및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4〉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목표 및 체계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더불어 국내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인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또한 선정되었다. 이는 국제적 지표체계와 유사하게 3개 분야, 14개 영역, 34개 항목, 77개 지표의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지표를 한국에 맞게 선정한 것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3개 분야의 지표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п	2_4\	국가지속가능박저	TIT	디피레게

분야	영역	항목 수	지표 수
사회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재해·안전, 인구	12	25
환경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11	27
경제	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11	25

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발표된 이듬해인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공포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던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 지속가능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면서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07년 7월 국회에서 의결된 후, 8월 3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 시행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5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비전'을 통해 선언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장치의 구축이라는데 그 제정의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10년 1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과 맞물려 새 정부의 중점추진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에서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된다. 개편된 '지속가능발전법'은 기존의 5장 22조 구성에서 6개 조가 삭제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3회의 개정을 더 거친다.

한편, 201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의 개정을 가져온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다수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실시하고 기후변화, 지 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추진하 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 업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녹색성장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목적으로 2009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7장 6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제정 후 2017년까지 6회의 개정을 거친다.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	2-5\	지속가능박전법	여혀
\ II	Z-3/	시독시중불합합	7154

	법령	법률	제정/개정일	시행일	내용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612호	2007.08.03	2008.02.04	제정
2	지속가능발전법	제9931호	2010.01.13	2010.04.14	타법개정
3	지속가능발전법	제11530호	2012.12.11	2013.12.12	타법개정
4	지속가능발전법	제13261호	2015.03.27	2015.03.27	일부개정
5	지속가능발전법	제13532호	2015.12.01	2015.12.01	일부개정

〈표 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연혁

	법령	법률	제정/개정일	시행일	내용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	2010.01.13	2010.04.14	제정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599호	2011.04.14	2012.04.15	타법개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676호	2013.03.23	2013.03.23	일부개정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965호	2013.07.30	2013.10.31	타법개정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122호	2016.03.29	2016.09.30	타법개정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811호	2017.04.18	2017.04.18	일부개정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839호	2017.07.26	2017.07.26	타법개정

마.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1-2015)' 수립

2010년에는 2006년 수립한 '제1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06~2010)'의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인 '제2 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4개 관계부처의 협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안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 후 2011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수립되었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07년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논의 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문제로 강조되는 흐름과, 국토·환경자원의 투입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추구에서 환경·경제·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되는 국제사회의 정책방향성에 주목하여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적극 반영되어 수립되었다. 이는 주요선진국들이 환경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경제·사회 각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대응전략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염두에 둔것이기도 하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환경 및 자원의 지속기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이에 속한 25개 이행과제와 84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의 설정은 1차 기본계획의 평가에서 경제와 사회의 양적 성장기반이 개선된 반면 소득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은 저하한 점을 반영하여 세대내 형평성 강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삶의 질 향상과 자연의조화를 의미하는 생태적 형평성 증진의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만료에 따라 그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5개년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기조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는 점과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해나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국가단위의 대응 전략이면서 동시에 국제협력, 합의이행의 공통적인 필수 정책이자 평가도구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6)'의 비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5〉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비전체계

제3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환경개발회의 이후 매 10년 마다 유엔 차원에서의 환경에 대한 회의가 추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열린 요하네스버그의 지속 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리우+10)에 이어 리우 회의 후 20주년을 맞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 하고, 앞선 회의들의 결의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

를 목적으로 하였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 회의의 준비과정에서 강조된 '양질의 일자리',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식량안전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 '물', '해양', 그리고 '재난대비'의 7개 영역을 우선 논의할 영역으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 '우리가 바라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비구속적 성명인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192개 유엔 회원국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치적 결의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합의를 담은 성명으로, '의제 2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부이행계획'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앞선 의제 및 계획들을 재확인 하는 내용 또한 담겨있다. 총 6자으로 그성되 '우리가 바라는 미래' 서명은 1자에서 유에 회원구의 고통이

총 6장으로 구성된 '우리가 바라는 미래' 성명은 1장에서 유엔 회원국의 공통의 비전을 다루고 기존 의제 및 계획들에 대한 정치적 결의의 갱신에 대한 내용을 2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의 주제였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녹색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에대한 내용이 각각 기술되어있다. 5장에는 실행과 후속조치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명시되었으며 끝으로 6장에서는 재원조달, 기술 등 실행 수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 성명에는 2015년을 맞아 종료가 도래한 기존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개발을 위한 과정의 발족에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20주년을 맞아, 그간 국제사회에서 합의되어온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여러 의제들에 대한 재결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과 2015년 이후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국제사회 차원의 달성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개발, 설정에 대한 합의를 공식화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탄산가스의 배출 감소와 자원 효율성 증대 꾀하며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경제모델인 녹색경제의 이행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세계 유엔 회원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의한 2 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목표이며, 2015년 9월 제70회 유엔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 채택되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의 개

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유엔에서 빈곤퇴치를 위해 합의된 새천년개발목표의 기한인 2015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보건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발전을 제시하였다. 반면후자는 빈곤과 불평등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경제개발, 환경보호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의 대상국가 또한 새천년개발목표는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달성해야하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ODA와 더불어 공공부문(세금)과 민간부문(무역, 투자) 등 다양한 재원이 제시되었다. 목표의 감시와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유엔이 주도적으로 각 국가들의 보고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표 2-7〉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교

목표	MDGs(2002-2015)	SDGs(2016-2030)		
범위 사회발전 중심		경제, 사회, 환경 포함		
달성 주제 극심한 빈곤 해소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로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		

*출처: KoFID, KOICA(2016)의 내용을 저자 수정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목표는 총169개가 담겨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포함되어 전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이룬다. 지표는 유엔 소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개발을 위한 과계기관 및 전문가 그룹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IAEG-SDGs)'에 의해 제작되었다.

〈표 2-8〉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목표
환경보호	목표 7, 목표 12,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
경제성장	목표 8, 목표 9, 목표 10, 목표 11
사회발전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목표 5, 목표 6
전제조건 및 방법	목표 16, 목표 17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조를 보면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영역과이 영역들에 속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회발전의 영역에는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의 여섯 가지 목표가 포함된다. 경제성장의 영역에 속하는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다섯 가지이다. 환경보존의 영역에는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의 다섯 가지 목표가 속한다. 끝으로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와 '글로벌 협력'의 두 가지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법에해당한다.

〈표 2-9〉 유엔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목표	내용
		1-
1	빈곤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_	71人) ふょ)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
2	기아 종 식	가능한 농업을 강화한다.
3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
	20-1 20	다.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선명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5	성평등	F.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가 물과 위생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보
0		장한다.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모두를 위한 적당한 가격이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
8	경찰의 출시되다 경제성장	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산업, 혁신, 사회기반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9	시설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불평등 감소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0		국가 네, 국가 전 물병하를 심으시신다.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한다.
	공동 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12	시작기중만 생산과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보장한다.
	 '	
13	기후변화와 대응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대응을 시행한다.
1.4	레스타케레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
14	해양생태계 보존	용한다.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이용을 보호, 복원, 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15	육상생태계 보호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기소기나바라의 이레 퍼워르크 교육적이 기침로 조기되고 ㅁ드가 끊이세 점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 근일 ㅜ 있도록 아고, 도는 구군에서 요파식이고 작업성 있고 포장식인 제도 - 를 구축한다.
17	글로벌 협력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초치	IDI	<u> </u>

*출처: UN

17개 유엔지속가능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목표인 빈곤퇴치(No Poverty)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끝내는 것(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 here)을 의미한다. 이 목표는 절대빈곤의 퇴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 장제도의 확립도 포함된다. 이 목표는 하위에 7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지표로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국가 빈곤 기준선 이하의 인구비율, 인구 10만

명 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피해자 수 등이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기아종식(Zero Hunger)이며 이는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 및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는 것(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기아종식을 위해 빈곤층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농업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통한 식량안보도 이 목표의 일환이다. 기아종식은 8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지표로는 영양부족 출현율, 정부지출 농업지향지표 등이 있다.

세 번째 목표는 건강과 웰빙(Good Health and Well-being)이다. 이 목표는 전 연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것(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을 내용으로 한다. 이 목표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 감소, 필수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보편적 의료보장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13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 정도는 산모사망률,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인구 1,000명 당결행 발병률, 자살률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네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으로 누구나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고 모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가 증진되는 것(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을 의미한다. 이는 연령, 인종,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이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 기술훈련 등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목표이다. 10개의 세부목표를 가진 이 목표는 신체, 학습, 정신사회적 건강의 발달상황이 순조로운 5세 이하 아동의 비율, 정식초등교육 입학연령 1년 전 체계적인학습에 참여하는 비율 등이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다섯 번째 목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을 내용으로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목표는 조혼, 강제결혼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평등 목표와 관련한 세부목표는 9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 목표와 관련된 지표로는 성별, 나이, 지역에 따른 무급 가사 및 양육 활동 시간 비율, 20-24세 연령대의 여성 중 15세 이전 및 18세 이전 결혼한 여성의 비율 등이 있다.

여섯 번째 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이다. 이는 모두에게 물과 위생설비의 사용과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보장과 함께 수질오염 감소, 수자원 관리 등의 8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목표의 지표로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음용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하수의 안전한 처리 비율, 물과 연관된 생태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 등이 선정되어 있다.

일곱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이며 이는 적당한 가격에 공급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 nd modern energy for all)을 내용으로 한다. 5개의 세부목표가 설정된 이 목표의 달성 정도는 전기 사용가능 인구 비율, 최종 에너지 총소비 량 대비 재생 에너지의 비율 등으로 측정된다.

여덟 번째 목표는 양질의 에너지와 경제성장(Decent Work and Economic Grow th)으로 이는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고용과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는 것(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 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을 내용으로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목표로 소규모 창업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표의 세부목표는 12개이며 그 달성 정도는 실질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 mestic Product: GDP) 성장률, 근로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아동노동에 고용된 5세부터 17세 사이의 유소년 수와 비율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아홉 번째 목표인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 cture)은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하는 것(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환경 친화적 공정을 적용한 산업의 확대, 과학기술연구 강화 및 투자 등 8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지표로는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주민 100만 명당 전임연구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열 번째 목표는 불평등의 감소(Reducing Inequality)이다. 이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을 내용을 한다. 이 목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와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개발도상국의 영향력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10개 세부목표가 설정된 이 목표는 재정건전성지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들의 투표권과 멤버 수 비율, 정립된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의수 등을 지표로 한다.

열한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 s)로 이는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 e)을 의미한다. 이 목표에는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과 취약계층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의 확산,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에 대한 보존 등 10개의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성별, 나이, 장애여부에 따른 대중교통에의 편리한 접근 인구 비율, 국가 및 지방차원의 재난위험감소전략이 구비된 국가의 수 등의 지표가이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열두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하는 것(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내용으로 하는 목표이다. 이 목표에는 지속가능한 생간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대폭 감축한다는 등의 11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목표의 달성 정도는 세계 식품 손실 지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기업 수, 재활용되는 물질의 무게(톤), 국가적인 재활용률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열세 번째 목표는 기후변화와 대응(Climate Action)으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하는 것(Take urgent act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연재해의 해를 입은 경우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5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관련 지표로는 국가 및 지방차원의 재난위 험감소전략이 구비된 국가의 수, 인구 10만 명 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피해자 수 등이 선정되어 목표달성 정도를 가늠하는데 사용된다.

열네 번째 목표는 해양생태계 보존(Life below Water)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것(Conserve and sust 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 nt)이 목적이다. 해양오염 방지, 여류의 남획 금지,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추구 등을 내용으로 10개의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 목표는 연안 부영양화 지수 및 부양 플라스틱 쓰레기 밀도 지수 등으로 측정된다.

열다섯 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호(Life on Land)는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복원, 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를 방지 또는 중지하며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는 것(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 sity loss)을 내용을 한다. 산림, 습지, 산악지역 등 모든 육상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사막화 방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12개의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목표의 당성 정도는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 및 관리 진행 상황, 전체 육지 면적 대비 황폐화된 육지 면적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열여섯 번째 목표는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ns at all levels)을 목표로 한다. 이는 앞선 15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방법의 의미가 있으며 세부목표는 12개이다. 이 목표의 측정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구 10만 명당 의도적 살인에 의한 희생자 수, 총 수감자 수 중 확정판경을 받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최근 공공 서비스 이용경험에 만족한 인구 비율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열일곱 번째 목표인 글로벌 협력(Partnerships for the goals)은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 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내용으로 한다. 열여섯 번째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와 함께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방법으로서 설정된 이 글로벌 협력 목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평등한 무역,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19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 정도는 국내 조세를 통한 예산 조달 비율,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세계 가중평균관세, 인터넷 이용자 수, 속도에 따른 인구 100명당 고정 인터넷 브로드밴드 수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

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이후 국내 동향

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수립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2010년 수립되어 추진해온 '제2차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이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법적 근거는 앞선 2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이며, 계획의 범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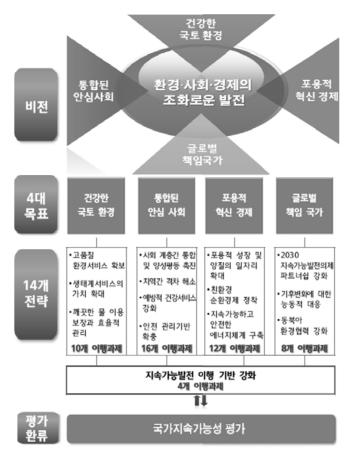
2015년 2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4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2015년 11월과 12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각

각 거친 후, 2016년 1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획 수립이 확정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대외적으로 제70차 유엔총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며, 국가 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이 심화되는 국 제환경 속에서 수립되었다. 대내적 환경으로는 악화되는 주요 환경문제와 저출산고 령화양극화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문제, 그리고 고용 없는 저성장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과제들이 대부분 환경분야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지속가능발 전 키워드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유엔에서 제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내 환경에 맞게 반영토록 하였으며,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에서 취약 분야로 평가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양성평등, 비정규직 차별 등의 영역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전으로 하여,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의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체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환경분야에 상대적으로 치우쳐있던 기존 제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환경, 사회, 경제, 국제의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공통의 목표로 제시된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정책 필요를 접목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2015년 9월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 및 달성 기한(2016~2030)과 추진기간(2016~2035)이 중첩되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신속히 반영한 점은 국제사회 정책흐름과 국내정책의 공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전략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0〉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1	빈곤퇴치	2-1.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기아종식	2-2. 지역 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과 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양질의 교육	2-1.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5	성평등	2-1.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6	깨끗한 물과 위생	1-3. 깨끗한 물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10	불평등 감소	2-1.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와 대응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15	육상생태계 보호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대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협력	4-1. 2030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제4절 지속가능발전 연계 스포츠 시사성

1. 지속가능발전 달성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발, 평화 등 인류공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촉매역할을 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스포츠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경쟁스포츠, 생활스포츠, 신체활동, 유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세계화와 더불어 스포츠도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세계 공통의 언어로서 그 전 세계적인 전달력을 가지게 되었다. 스포츠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인류 미래의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8년 유네스코가 스포츠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권(fundamental right for al l)'으로 표현한 것처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스포츠를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다수의 국제 협약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DP)',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인류의 기본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는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 공정한 경쟁, 규칙의 준수, 상대방에 대한 존중 등 인류 기본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스포츠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유엔으로 하여금 스포츠를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합의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용대비효율이 높은 수단(cost-effective tool)으로 강조하게 하였다. 스포츠의 이러한 유효성은 IOC차원에서도 당연히 인지되었으며, IOC는 유엔 연구보고서인 '평화와 개발을 위한 스포츠의 힘의 활용(Harnessing the Power of Sport for Peace and Development -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s)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목적에 대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 건강 증진과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 가치 기반 학습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성취
- 여성과 여아의 능력발휘를 포함한 양성평등의 증진
-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의 증진
-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사회건설에 기여

- 인적자원과 인간의 잠재력 개발

이와 같이 인류의 기본가치와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활용의 대상이 소수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며, 복수의 영역에 걸쳐(cross-cutting)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서 국제사회의 특정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스포츠를 활용한(sport-based approaches)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할 때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촉매(catalyst), 조력자(enabler) 등으로 표현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가진 효과성과 범용성을 보여준다.

스포츠는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실용적인 수단으로 일조한 바 있다. 새천년 개발목표는 개발도상국의 극심한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대상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 부채경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곤 감축전략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s)'을 제출해야 했다. 이 빈곤감축전략계획은 각 나라가 빈곤을 감축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담고 있는데 케이프 베르데, 모잠비크, 시에라 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등 다수의 저소득 국가들이 제출한 빈곤감축전략계획에는 스포츠에 기반한 접근법(sport-based approaches)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있었다. 이는 스포츠가 비용대비효율이 높은 도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IOC는 1997년 이래 UNHCR과 함께 네팔에 위치한 부탄 난민캠프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스포츠 활동의 제공을 통해 캠프 내에서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극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Appendix 1에 더 많은 사례 소개). 다음표는 스포츠가 새천년 개발목표의 8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표 2-11〉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에 있어서 스포츠의 공헌

- 운동참가자, 자원봉사자 및 코치에게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이전가	
	능한 평생
기술을 습득하게 함.	
- 취약계층을 지역사회 서비스 및 스포츠 기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한 지원에
연계시켜 줌.	d
1. 빈곤과 기아 근절 - 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 장비 생산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기술발전 - 스포츠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에	
을 부과하도록 함	
- 스포츠는 부정적 인식을 낮추고 자존감, 자신감 및 사회기술을 높여 취임	d능력증가
(고용가능성향상)의 결과를 가져옴.	
-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
하고 학업적 성취 향상에 기여	
2. 보편적 초등교육 -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
달성 게 교육의 교육기회의 대안을 제공함	人ロラゴ
-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데 도움을 줌.	公羊合/「
- 스포츠를 통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우호증진
의 기회 제공	
- 스포츠 참여로 자존감과 자신감 상승 그리고 신체 통제력(조절력) 향상	
3. 양성평등 증진 및 - 여아와 여성들은 리더십 기회와 경험을 획득	
여성능력 고양 - 스포츠를 통해 여아와 여성들이 더 큰 안정성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이	끌어갈 수
있는 성별 규범에 긍정적 변화 발생	기단기 되
- 장애가 있는 여아와 여성들에게 건강 정보,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및 i 험을 얻을 수 있는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기회를 부여	다녀십 경
- 스포츠를 통해 젊은 엄마들에게 건강 정보를 교육하고 알림으로서 더	욱 건강한
아이로 양육	
- 체력 상승은 아이들의 질병 저항력을 향상시킴	
4. 유아사망률 감소 - 스포츠를 통해 고위험군의 청남아 임신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스포츠 기반 예방 접종 및 예방 캠페인으로 홍역, 말라리아 및 소아마	비로 인한
어린이 사망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음.	, z] A = n]
-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더 큰 수용을 불러일으 영유아 살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	건집으도써
- 스포츠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여아와 여성들에게 생식 건강 정보 및 서비	비人 계고
5. 산모건강 증진 - 체력 상승이 출산 후 회복 속도에 도움	네크 세공
- HIV 와 에이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증가시	키고 그들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데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	기포 그림
- 스포츠 프로그램이 HIV 감염을 일으키는 건강위험행동의 비율을 낮추는	데 연관이
6. HIV와 에이즈,	
막라리아 및 기타 - HIV 예방 교육 및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HIV 감염률을 주가 감	소시킬 수
질병 퇴치 있음. - 홍역, 소아마비 및 기타 질병의 예방접종률을 증가시키는데 스포츠가 여	기요되 스
- 용역, 조아마미 및 기타 설명의 예명집 용할을 증가시기는데 스포스가 되었음.	15일 ㅜ
- 말라리아, 결핵 및 기타 질병의 교육 및 예방 캠페인을 실행하고 영향력	을 증가시
키기 위해 유명선수의 참여 및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활용될 수 있음.	

〈표 2-11〉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에 있어서 스포츠의 공헌

새천년개발목표	스포츠의 공헌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 스포츠 기반 공교육 캠페인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상승시킴 - 스포츠 기반 사회 동원 계획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활동참여를 향상 시킬 수 있음.
8. 발전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 개발 및 평화를 위한 스포츠 노력이 글로벌 파트너쉽을 촉진시키고 정부, 기부자, NGOs 그리고 전세계 스포츠 기구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킴.

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2000년 이후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스포츠는 수차례 의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언급되며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발전 달성의 수단으로 인정받은 스포츠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국제사 회의 새로운 결의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를 모은다. 스포츠가 교육, 건강, 개발, 평화의 증진 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2014년 10월 채택된 유엔 결의안 A/69/L.5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된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2015년 이후의 발전 의제의 맥락에서 스포츠를 적 절히 고려하기를 권장(encourages Member State to give sport due consideratio n in the contex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하여 새천년 개발목표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이행에도 스포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유엔의 스포츠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심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 선언(Declar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 e Development)'속의 '스포츠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Sport is also an important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새 천년 개발목표를 비롯해 과거 유엔의 여러 개발 및 평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스포츠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 유엔은 다음 표와 같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스포츠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표 2-12〉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있어서 스포츠가 가능한 공헌

지속가능발전목표	스포츠 공헌도
1. 빈곤퇴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전이가능한 사회적 취업 및 생활 기술, 경제 참여, 사회적 생산성 및 회복력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수단으로 스포츠 를 이용
2. 기아종식	영양과 농업 관련 스포츠 프로그램은 기아문제해결을 위한 식량 프로그램 및 이 주제의 교육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수혜자들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및 균형 잡힌 식단으로 생활하도록 교육받고 장려된다.
3. 건강과 웰빙	활동적 생활방식 및 정신 건강의 주요 구성요소는 신체활동과 스포 츠이며, 이것들은 성교육, 생식 및 기타 건강 문제에 대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비전염성 질병과 같은 위험 예방에 기여한다.
4. 양질의 교육	취학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체육 및 스포츠활동을 통해 정규 교육 시스템 등록, 학교 출석 및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포츠 기반 프로그램은 초등·중등학교 교육 수준 이상의 학습 기회와 직장 및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도한다.
5. 성평등	양성 평등과 그에 대한 규범 및 태도의 변화는 스포츠 기반 사업과 프로그램이 여성과 여아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진 보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는 잠재력을 지닌 스포츠 상황 에서 촉진되어질 수 있다.
6. 깨끗한 물과 위생	스포츠는 물 위생 요구 사항 및 관리에 관한 메시지를 보급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플랫폼일 수 있다. 그 활동과 의도된 결과가 이러한 주제로 연관되어진다면 스포츠 기반 프로그램이 물 이용가능성에 개 선을 불러올 수 있다.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스포츠 프로그램과 활동이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발 및 접근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논의 및 홍보를 위한 포럼으로 활용됨.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스포츠 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생산, 노동 시장 및 직업 훈련은 여성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 집단을 포함한 이들에게 고용 가능성 향상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는 보다 큰 공동체 형성과 스포츠 관련 경제적 활동의 성장에 원동력이 된다.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재난 후 스포츠 및 여가활동 시설의 재건축과 같은 맥락에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 기반 사업은 복원성(resilience) 및 산업화 요구에 득이 될 수 있다. 스포츠는 개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른 기존의 방법들을 보완하는 발전 및 평화를 촉진하는 혁신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0. 불평등 감소	개발도상국에서 스포츠의 발전 및 스포츠를 통한 발전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태도는 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지역과 사람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안에서의 통합은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용이 용이한 스포츠 시설 및 서비스가 이 러한 목표의 발전에 기여하며, 통합적이고 탄력적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거주지에 대한 좋은 실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스포츠 공헌도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스포츠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통합하면 다른 산업에서의 소비 및 생산 패턴에 대한 광범위한 지속가능한 접 근 방식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메시지와 캠페인은 스포츠 제품, 서비스 및 이벤트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13. 기후변화와 대응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이벤트, 특히 관광을 수반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는 요소들을 통합시킬 수 있고, 기후 문제에 대한 긍정적 대응을 촉구하고 구현할 수 있다.
14. 해양생태계 보존	수상스포츠와 같이 바다에서 하는 특정 스포츠 활동과의 연계성은 스 포츠 안팎에서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지하기 위 해 활용될 수 있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스포츠는 육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육 및 지지의 기반을 제공한다. 야외 스포츠는 지구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사용을 장려하는 보호책, 활동 및 메시지를 통합할 수 있다.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스포츠는 분쟁 이후 사회를 재건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재결합시키며, 전쟁 관련 트라우마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 이벤트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게 상 호작용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상호 이해, 화해, 단결 및 평화 의 문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7. 글로벌 협력	스포츠는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 목표를 현실화하고 이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된다. 그러한 목표실행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포츠 세계는 민간 수준에서 전문적 수준에 이르기까 지,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포츠 활용에 공통의 책무를 지니고 다양한 성격의 파트너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IOC는 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2015년 이후 발전의제 이행에 있어서 스포츠의 기여(The Contribution of Sport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를 통해 스포츠가 UN의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유의미한 일조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스포츠가 가진 세계 공통의 언어로서의 특징과 모든 세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강한 전달력을 가진 특성으로 UN의 새로운 개발목표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Appendix 2). 특히, IOC는 교육, 건강, 개발, 평화의 증진에 근본적인 역할이 가능한 스포츠가 UN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기여할 수 있는 목표 여섯 가지와 그세부목표를 지정하였다. IOC가 제시한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 3: 건강과 웰빙', '목표 4: 양질의 교육', '목표 5: 성 평등',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목표 17: 글로벌협력'의 여섯 가지 목표이다. 아래 표는 IOC가 제시한 스포츠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6개와 그 세부목표를 보여준다.

〈丑 2-	-13> IO	DC가 제시한	・스포츠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	---------	-------	-----	-------	----	----------

	목표	세부목표
3	건강과 웰빙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에 기인한 조기사망률을 1/3 가량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4	양질의 교육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중등 교육을 동등하게 무료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게 한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의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5	성평등	 5.1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5 2030년까지 정치, 경제, 공무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 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및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6.1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7	글로벌 협력	※ 세부목표 지정 없음

요컨대 스포츠는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개발과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스포츠의 전 지구적인 인기, 글로벌 의사소통의 플랫폼으로서의 강점, 이해당사자들을 연계하는 능력, 광범위한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해 걸쳐 사용이 가능한 점, 능력개발과 동기부여의 기능 등 그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에 스포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도 주목받고 있으며 유엔과 IOC차원에서 그 역할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에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함에 있어서 스포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유엔지속가능목표는 새천년 개발목표와는 달리 국제적인 맥락에서의 목표 이행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의 국내적인 맥락에서도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회원국들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이 국제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어온 스포츠를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수단으로도 고려할 수 있음을 뜻한다. 스포츠의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있어서 그 효용성과 범용성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자하는 개별 국가들에게 스포츠정책이 국내적, 국외적 맥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정책 반영 해외 사례

제1절 문헌고찰

제2절 영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스위스

제5절 해외 사례 비교 분석

제6절 해외 시례와 한국의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문헌고찰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개별 국가의 스포츠 정책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중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이 있고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베이스인 EBSCOhost의 SPORTDiscuss와 eBook Collection, E-Journals를 선택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SDGs, Susta inable development Goals, Sport를 조합하였으며, 최종 검색 시점은 2017년 10월 31일이었다. 선정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을 실행한 결과 총 16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렇게 검색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연관성(자료의 제목이 연구에 필요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가?, 초록을 통해 본 자료의 내용이연구에 필요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가?)과 자료의 접근성(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가?, 자료가 언어적으로 해독이 가능한가?)의 기준으로 불필요한 문헌자료를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건의 문헌이 수집되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검색 결과 및 배제 기준		문헌 수(건)
검색 결과		16
자료의 연관성	제목	8
	초록	4
	소계	12
자료의 접근성	입수불가	1
	언어	1
	소계	2
최종 수집		2

검색 대상의 출판연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검색 키워드 또한 폭넓은 범위로 검색이 가능한 것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문헌이 두건에 그친 것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이 2015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며, 학술연구의 특성상 해당 개념이 반영된 연구 자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 결과 수집된 두 건의 문헌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활용에 대한 개념화와 그 사례에 대한 문헌으로 본 챕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의 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때문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해당 문헌은 본 연구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스포츠의 관계에 대한 개념화

에 활용하였다.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비교적 적은 관계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별로 정책에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국가별 정책보고서 등 국가발간 자료 및 기관발간자료를 수집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별 문헌연구는 본 연 구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기 위한 해외사례 로 선정한 영국, 캐나다, 스위스 3개국의 정부발행 문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해 당 국가들에서 발행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수집, 참고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이 각 국의 정책들에 반영되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대표 문헌 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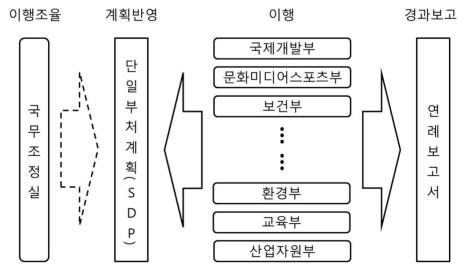
제2절 영국

1. 단일부처계획(Single Departmental Plan)

영국정부는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앞장설 것을 여 러 정부공식문서들을 통해 밝히고 있다. 영국정부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기존의 목표인 새천년 개발목표와는 달리 국내의 영역에서도 목표의 달성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전 부처에 걸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정책 틀에 접목하도록 하였다.

영국정부가 유엔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정부 정책 틀에 접목한 대표적예로 부처별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단일부처계획(Single Departmental Plan: SD P)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단일부처계획은 현 정부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방안을 기술한 이행계획서로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계획을 담고 있다. 단일부처계획은 영국정부의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를 포함한 20개 부처와 3개 지역실(Northern Ireland Office, Scotland Office, Wales Office)가 각자의 소관 분야에 대한 과업이행 계획을 기술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주요 활동 경과및 결과를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각 부처의 계획은 국무조정실과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수립된다. 단일부처계획에는 정부공약의 주요 이행, 공공서비스 및 기타 주요 부처 과업의 이행, 부처의 기능 개선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조치, 부처 간 협업을 요구하는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 등을 담고 있다.

단일부처계획은 각 이행목표에 대한 달성 경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부처로 하여금 이를 수시로 갱신,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각 부처들로 하여금 각자의 소관영역과 연관이 있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계획을 단일부처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행상황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s and Accounts)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영국 내 이행상황을 단일부처계획을 통해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정부는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cs: ONS)과 함께 유엔의 사후 검토 프로세스에 맞춰 목표이행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유엔의 연례 경과보고를 위한 글로벌 지표에 대응하는 영국 자료를 유엔에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영국정부는 정부의중장기 계획의 핵심 정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단일부처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목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의제에 대한 영국정부의 실행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라 자평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영국정부의 영국 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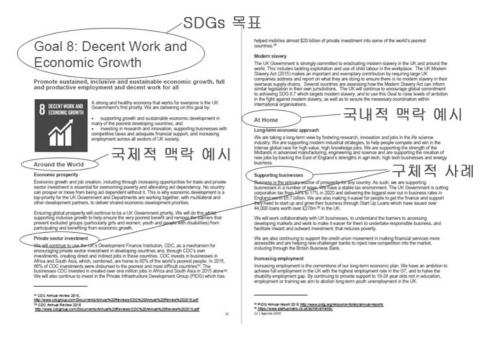


〈그림 3-1〉영국정부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2. 영국정부의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접근

영국정부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모든 부처에 걸쳐 추진하는 전 정부차원의 과제로 하고 있으나, 정부부처 중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서 역할이두드러지는 정부부처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라고 할 수 있다. 국제개발부는 '세계의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liminate world poverty)'을 목표로하여 영국 정부의 해외원조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국제개발부는 영국하원(House of Commons)의 국제개발상임위원회(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의 소관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감시를 받는다. 해외원조를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국제개발부는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 추진 시기에 이 목표의 달성 지원을 하는 영국정부의 대표적인 부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목표 달성 이행에 있어서 국제개발부의 중요성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도 다르지 않은데, 이는 영국정부 내 타 부처들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도 다르지 않은데, 이는 영국정부 내 타 부처들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서 주로 국내의 맥락에서 이행영역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개발부는 영국의 대외적 차원에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제개발부는 국제개발상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관련 된 질의를 통해 요청된 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개괄보고서도 작성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제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목표 이행에 대한 영국정부의 접근 - 국내 및 국제의 맥락에서(Agenda 2030: The UK Government' s approach to deliver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t home and around the world)'라는 제하의 이 개괄보고서는 영국정부가 17개 유 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개관과 예시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1 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각각에 대해 영국정부의 이행수단과 그 구체적인 예시를 국 제적(Around the World), 국내적(At Home)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보고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서 국제개발부의 이행 영역 에 국한되지 않고 영국정부의 전 부처 영역을 대상한다. 이는 17개 목표 달성을 위 해 영국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국제와 국내의 맥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 행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 국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대중의 이해를 돕고자 실용적 목적으로 생산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2〉 영국 국제개발부의 의제 2030(Agenda 2030) 보고서 구성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영국의 접근법을 보면 기존에 수립된 정부 정책 계획에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접목하는 방식과 각 부처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부처별 5개년 계획인 단일부처계획에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반영하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비록 각부처의 계획에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지만,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로부터 보고된 단일부처계획을 통해 이를 보고받고 조율하는 수준의 개입에 그치는 점에서 그 반영 여부는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수 있다.

일례로 대외적 차원에서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개발부의 단일부처계획에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하며, 부처의 어떤 정책에 특정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가 접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 하원 국제개발상임위원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위원회가 정부의 의제 2030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정책 백서 편찬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 이에 백서 편찬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크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후 국제개발부가 생산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보고서인 '의제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목표 이행에 대한 영국정부의 접근' 또한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이라는 표현대신 '이행에 대한

접근(approach to delivering)'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꺼리는 점에서도 정부의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요컨대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적, 국내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표하고 있으며, 부처별 5개년 정책계획인 단일부처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기존 정책 틀에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접목하여 추진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는 조율 수준의 개입에 그치는 등 실제적으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요한 국가적 정책목표로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이 합의된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 당시 영국 총리(데이빗 카메론)가 불참하였다는 사실과 맞물려 지속가능발전 이슈가 현 영국정부의정책우선순위에 있어서 수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3절 캐나다

1.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지속가능발전 이슈와 관련한 캐나다 정부의 정책은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Federa 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SD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속간능발전 연방전략은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골자로서 지속가능발전 우선순위, 목표와 지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설정 등이 담은 캐나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주요 정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제정된 연방 지속가능발전법(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은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수립 및 실행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는 관련 주무부처로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전 정부 차원의 전략을 3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 발표하고 있다.

연방 지속가능발전법은 26개 정부부처들이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에 따라 이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은 장기목표와 더불어 중기 및 단기 달성목표를 제시하며 이 목표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은 2010-201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계획에 이어, 2013-2016년 기간 대상의 2차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2016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 중이다.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은 그 수립과정에서 여론수렴 및 반영과정(consult ation process)을 거친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의 수립과정에서 해당 전략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용 초안(consultation draft)을 최종본에 앞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논의를 유도한다. 이러한 여론 수렴 및 논의는 회의, 서면 등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도 이를 위한 특정 용도의 온라인 공간(www.letstalksustainability.ca),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초안에 대한 피드백은지방정부, 의회, 정부자문위원회 등 공공 영역에서부터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연구소, 기업, 개인 등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제시된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이러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을 수립, 공표한다. 다음 그림은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초안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논의와 견해를 수집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보여준다.



〈그림 3-3〉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여론수렴 웹페이지(www.letstalksustainability.ca)

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

캐나다의 환경·기후변화부는 초안 수립-논의-환류의 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론수렴용 초안을 공개하면서 각계의 견해와 관점을 수렴하고자 하는 특정 이슈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선정되는 이슈들은 계획이 수립되는 국제, 국내의 주요 정책흐름과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된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의 경우, 수립의 시점이 2016년이었던 만큼 2015년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의제 2030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이 연방전략의 여론수렴 주요 주제로 포함되었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의 여론수렴용 초안을 공개하며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제시', '목표와 지표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증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역할 주지', '협력체들의 기여에 대한 인정'의 4개 주제를 여론수렴과정에서 견해를 듣고자하는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 초안 논의 과정에서 환경·기획부는 캐나다 사회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유엔지속가능목표를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에 좀 더 긴밀하게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지속가능목표 중 환경 측면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길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주목하여 환경·기후변화부는 '세계에서 가장자연친화적인 나라 중 하나로서의 캐나다와 삶의 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초안에 5개 목표로 제시되었던 전략 프레임워크를 여론수렴과정에서 얻어진 피드백에 따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13개 전략 프레임워크로 세분화하여 수정, 최종 연방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의 초안과 최종본의 프레임워크 변화는 다음 두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3-2〉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 초안 목표와 연관 SDGs

연방전략 목표	연관 SDGs
	2. Zero Hunger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Taking Action on Climate Change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5. Life on Land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Clean Technology, Jobs and Innovation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National Parks, Protected Areas and Eco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ystems	14. Life below Water
ystems	15. Life on Land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Freshwater and Ocean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Trestivater and Secure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3. Good Health and Well-being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Human Health, Well-being and Quality o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f Life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표 3-3〉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 최종본 목표 및 연관 SDGs

연방전략 목표	연관 SDGs	
Effective Action on Climate Change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Low-carbon Government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13. Climate Action	
Clean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Modern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Clean Energy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Healthy Coasts and Oceans	14. Life below Water	
Pristine Lakes and Rivers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Sustainably Managed Lands and Forests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5. Life on Land	
Healthy Wildlife Populations	15. Life on Land	
Clean Drinking Water	Good Health and Well-being Clean Water and Sanitation	
Sustainable Food	2. Zero Hunger	
Connecting Canadians with Nature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afe and Healthy Communities	Good Health and Well-being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을 통해서, 특히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프레임 워크가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캐나다가 기존에 수립하고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계획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접목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 정부의 지속가능개발 연방전략에 유엔지속가능발 전목표의 반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5개 목표로 되어 있던 장기전략목표를 13개 목표로 세분화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전략목표에 대응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가 기존의 전략목표 1개 당 3~9개에서 재구조화한후에는 전략목표 1개 당 1~4개로 줄어 연방전략의 목표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보다 구체적인 범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의 특정 전략목표의 이행이 어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계획인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의 이행을 통해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한 정책적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요구의 대응 또한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체계도

한편,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에 따르면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연방전략에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는 목표는 12개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 문서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연방전략의 틀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속하는 과정에서 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계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연방전략 목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5개의 목표는 빈곤퇴치(Goal 1), 양질의 교육(Goal 2), 성평등(Goal 5), 불평등 감소(Goal 10),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Goal 16)로 환경적 측면과 관련이 크지 않은 목표들이다. 2010년부터 3차에 걸쳐 수립, 추진되어온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이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주요 이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캐나다 정부는 지속간능발전 전략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목시키기는 하되, 기존의 자

신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목표들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자국의 지속가 능발전 정책 기조를 변경하기 보다는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틀 안에서 그에 부 합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스위스

1. 지속가능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스위스 연방의회는 1997년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왔으며, 이는 2008년 이후 4개년 단위로 갱신되도록 정해졌다. 스위스 연방헌법의 2조, 54조, 73조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관련 조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수립되는 '지속가능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은 스위스가 연방 수준에서일관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연방 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조율하는 기능과 정책적기준 틀을 제공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이해 상충되는 정책 사안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을 의미한다.

2016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 016-19)'는 향후 4년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방의회의 전략을 설정한 중장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의 수립이 추진되던 시기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스위스는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에 의제 2030을 접목시키려 하였고 이를 통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를 꾀하였다.

스위스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는 수립과정에서 정부부처와 민간영역, 시민사회, 그리고 과학계 등 지속가능발전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검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해관계자 대담(Stakeholder Dialogue)'이라고 불리는 이 검토, 수정 과정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7개월여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 재계, 과학계, 지방자치단체, 연방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해관계자 대담을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은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장기적 비전부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까지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의 내용 전반에 걸쳐있었다. 이해관계자 대담을 통해 취합된 의견은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를 수립하는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는 '실행계획(Action Plan)'이라는 표현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연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영역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실행계획의 정책영역들은 정부정책 전반, 이해관계자 대담, 의제 2030에 기반을 두어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 영역들이다. 지속가능발 전전략 2016-19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9개의 주제영역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각각의 실행 계획은 '장기적 비전(long-term vision)', '중기적 과제(medium-term challenges)', '2030년까지의 목표(goals up to 2030)',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acti on towards achieving the goals)', '발전지표(development indicators)'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장기적 비전'은 지속가능한 스위스에 대한 장기적인 시나리오로서 특정한 시간적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략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제 21, 요하네스버그 선언,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의제 2030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틀로부터 구성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스위스의 방향성에 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적 과제'는 국제사회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 과제 프레임워크인의제 2030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착안하여 스위스의 맥락에서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각 주제영역에 해당하는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주제영역에 있어서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기적 과제로 해석한 것이다.

'2030년까지의 목표'는 연방의회가 해당 주제영역에 있어서 2030년까지 스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정책 우선순위이다. 이는 해당 영역의 장기적 비전을 반영하며, 중기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이다. 특히 이는 주제영역과 관련된 의제 2030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위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전략의 4년 단위 재검토 주기를 통해 국제적 또는 국내적 환경에 맞게 수정이 가능한 것들이다.

한편 '2030년까지의 목표'와 함께 제시되는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은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강조되어 연방의회가 현 임기(2016-19) 동안 추진하려는 행동에 관한 내용이다. 이 행동들은 국제적, 국내적 맥락 모두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행동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기 보다는 해당 정책 영역에서 중점을 두는 행동들에 대한 예시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발전지표'는 특정 주제영역에서 장기적 비전의 달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추세에 대한 지표로서 각 실행영역의 특정 목표들의 달성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하여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되는 것들로 선정,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 스위스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 구성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의 실행영역 중 하나를 예로 들어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행영역 9의 경우 주제는 '건강(Health)'이며, 장기적 비전 은 다음과 같은 사회상태의 시나리오로 기술된다.

'국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살고 나이 들어 갈 수 있다. 건강한 삶의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유도한다. 사람들은 위해한 요소 들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교육받고 잘 알고 있다. (이하 생략)'

이 실행영역에 있어서 중기적 과제로 설정된 유엔지속가능목표는 3번 목표인 '건 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력에서의 웰빙 증진'이다. 이에 해당하는 2030년까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7개가 수립되어 있다.

- 9.1: 비전염성질병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한 질병의 부담증가를 억제하며 조기 사망은 감소시킨다.
- 9.2: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거주 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비하여 10% 낮

게 감소시킨다.

- 9.3: 약물남용과 다른 중독으로 고통 받은 인구 비율을 줄인다. 약물 의존적 인 사람들은 필요한 도움과 치료를 제공받는다.
- 9.4: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지원을 제공받는다.
- 9.5: 스위스는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유지하며, 전염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 9.6: 스위스 거주민은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잘 교육받으며 알고 있다.
- 9.7: 양질의 헬스케어 공급을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춘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확보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은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방의회의 행동으로 목표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예로써 목표 9.6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연방의회의 행동방침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발전지표는 해당 실행영역의 장기적 비전의 도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건강기대수명(Life expectancy in good health)', '건강관련 행동' 신체 활동(Health-related behaviours: physical activity)',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치료 거부(Refusal of care for financial reason)', '고위험 알콜 소비(High-risk alcohol consumption)'가 제시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의 9개 실행영역은 상기 예와 같은 구조로 해당 실행영역의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는 스위스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의 각 실행영역에 해당하는 중기적 목표이자 연관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표 3-4〉 스위스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 실행영역과 연관 SDGs

실행영역	연관 SDGs (중기적 목표)	하위 정책목표
1. 소비와 생산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5개
2. 도시개발, 이동, 기반시설	9.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971
3. 에너지와 기후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13. 기후변화와 대응	67H
4. 천연자원	 기아종식 깨끗한 물과 위생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57भ
5. 경제 및 금융 시스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0. 불평등 감소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 글로벌 협력	57भ
6. 교육, 연구 및 혁신	4. 양질의 교육	3711
7. 사회보장	1. 빈곤퇴치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4711
8. 사회통합과 성평등	5. 성평등 10. 불평등 감소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8개
9. 건강	3. 건강과 웰빙	771

제5절 해외 사례 비교 분석

앞서 본 장에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의 정책 틀에 반영되는 방식을 영국, 캐나다,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사례에서 보이듯이 2015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전후 사례의 각국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해당 기간 사례의 국가들로부터 발행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자국의 상황에 맞춰 기존 정책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접목을 시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방식에서는 국가별로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다음 표는 각 국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문서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3-5〉 각 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문서와 SDGs의 반영 비교

국가	주요문서	제작주체	구조	반영 SDGs
영국	Agenda 2030: The UK Gov ernment's approach to deli ver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t home and around the w orld	국제원조부	17개 SDGs 국내 / 국외	17개
캐나다	Federal Sustainable Develop ment Strategy 2016-2019	환경기후변화부	13개 장기목표 25개 중기목표 40개 단기목표	12개
스위스	Sustainable Development St rategy 2016-19	연방의회	9개 실행영역 52개 하위목표	17개
한국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	17개

먼저 각 국 주요문서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영국의 '의제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목표 이행에 대한 영국정부의 접근'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유엔지속 가능발전목표의 채택 이후 이를 영국 내외에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문서이다. 영국의 경우, 각 부처별로 발행하는 5개년 정책계획인 단일부처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단일부처계획에 담긴 각 부처별 계획을 통해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서격인 해당문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각 부처별 이행을 돕기 위한 개괄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부처별 정책에 유엔지속 가능발전목표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자국 정책 틀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맞추어 넣는다고 하기 보다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자국의 정책을 변형, 신설하는 성격을 띤다.

반면, 캐나다와 스위스의 주요문서인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은 각각 두 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계획이 담긴 문서로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수립, 발행되어 오던 문서이다. 캐나다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된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는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0-2013'을 시작으로 2010년 이래 세 번째 발행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캐나다의 3개년 계획이다. 한편 스위스는 2008년 이후 4개년 단위로 수립해오던 지속가능발전 계획인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목하였다. 이는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자국의 기존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맞추어 접목하는 양상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6년 이래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인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였다. 한국의 경우를 상기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오던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관 련국가 계획에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맞추어 접목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캐나다, 스위스와 유사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문서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각 국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접목하는 방식의 차이는 문서에 담긴 지속가능발전 계획체계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국의 기존 지속가능발전 관련계획 또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는 캐나다, 스위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수립, 시행해온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 2016-2019는 13개장기목표, 25개 중기목표, 40개 단기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계획 2016-19는 9개 실행영역, 52개 하위목표의 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현 전략 및 계획에 앞서 수립했던 두 차례의 선행 계획도 유사한 체계로 구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수립된 첫 번째 계획인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 06-2010)을 1개 목표,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로 구성한 후, 2011년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2011-2015) 또한 1개 목표,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로 계획체계의 틀을 유지하였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 016-2035)에서는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계획체계를 구성하여 장기적 목표 차원에서 세분화가 되는 변화가 있었으나 기존의 계획체계 틀은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그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는 국가들은 기존 자국 정책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주요문서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17개의 국제사회의 목표를 기본 구조로 하여, 영국이 국제적, 국내적 맥락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기존 자국의 지속 가능발전 기조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된 지속가능발전 전략 또는 계획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도록 한단일부처계획(SDP)은 각 부처별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단일부처계획(SDP)을 통한 정책 계획 이전에도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정책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방식이었다. 예로써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 dia and Sport: DCMS)에서 수립된 'DCMS 지속가능발전 실행계획 2008-2011(DC MS Sustainable Development Action Plan 2008-2011)'은 단일부처계획(SDP) 이전에 해당 이슈에 대한 실행계획을 문화미디어스포츠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국가별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자국 정책에 도입하는 방식은 반영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범위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영국, 스위스, 한국은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모두를 대상으로 그 이행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중점을 두고 12개의 목표를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국 정책에 반영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범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에 구심적 역할을 하는 부처 또는 기구의 성격을 통해서도 설명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해당 문서의 제작주체가 국제원조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부처이며, 해당 문서의 제작이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전 정부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괄서의 성격으로 제작된 만큼 17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모두에 대한 이행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의 계획수립 주체가 연방의회로서 정부의 전 부처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구축하여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17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모두를 반영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되기 때문에 국가의 전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가 모두 접목될 수 있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의 수립주체가 환경기후변화부인 만큼 전략 자체는 국가차원이지만 전략의 성격은환경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도 환경과 관련된 영역에 중점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6절 해외 사례와 한국의 비교 및 시사점

앞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개별 국가들이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유엔지속 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스위스 3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 았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을 보았을 때 한국의 방식은 기존 지속가능발전 정책 틀과 융합을 추구하는 캐나다와 스위스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반영되는 수준에서는 계획체계의 구조상 캐나다, 스위스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계획 체계를 비교해 보면, 캐나다와 스위스는 장기적 목표의 성격으로 각각 13개 전략 목표와 9개의 실행영역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4대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라는 보조적 목표를 장기적 성격의 목표로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라는 보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조적 역할의 성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장기적 목표는 4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목표가 캐나다와 스위스에 비하여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장기적 목표에 연계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다음 표는 캐나다, 스위스, 한국의 장기적 목표와 이에 대응, 반영되는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종류 및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6〉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장기목표와 연관 SDGs

캐나다		스위스		한국	
전략목표	연관 SDGs	실행영역	연관 SDGs	4대 목표	연관 SDGs
1	7, 12, 13, 17	1	12	1	6, 11, 14, 15
2	12, 13	2	9, 11	_	1, 2, 3, 4, 5, 10, 1
3	9, 12	3	7, 13	2	1
4	9	4	2, 6, 14, 15	3	7, 8, 9, 12
5	7	5	8, 10, 16, 17	4	17
6	14	6	4	기반강화	16
7	6	7	1, 16		
8	8, 15	8	5, 10, 16		
9	15	9	3		
10	3, 6				
11	2				
12	11				
13	3, 12				
평균	1.6개	평균	2.2개	평균	3.47#

상기 표에서 보듯이 캐나다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에 반영된 12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3개의 전략목표에 매칭이 되어 있으며 1개의 전략목표 당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대응되어 있다. 이를 전략목표 1개 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 6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연결된 셈이다. 한편, 스위스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9개 실행영역에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각각 1개에서 4개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실행영역 1개 당 평균으로는 2.2개가 대응되어 있는 구조이다. 한국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경우, 4대 목표와 1개 보조 복표(기반강화)에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대응되어 있으며 목표에 따라 1개에서 7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목표 1개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3.4개가연계되는 꼴로 캐나다. 스위스의 그것과 비교하여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이 단독으로 연결된 목표가 없으며 포함되지 않거나(캐나다), 다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복수로 연계(스위스)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보조적 목표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와 이와 대응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을 제외하면, 사실상 목표 1개 당 평균 4개가 연결된다. 이는 캐나다와 스위스의 장기적 목표 1개 당 연계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평균 개수와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는 약 두 배 정도 됨을 의미한다.

물론 장기적 목표 당 연결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가 기존 국내 지속가능발 전 계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되는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의 세분화 정도와 그 분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의 제3 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는 캐나다와 스위스의 상응하는 전략 또는 계 획과 비교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대한 반영의 구체성에 있어서 캐나다와 스위스의 사례가 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계획 또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상의 특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단계(consultation process)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 단계에서 환경기후변화부는 주로 논의 및 의견을 듣고자하는 이슈를 선정하여 중점논의주제 차원으로 제시한다. 2016-2019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은 의제 2030 및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를 연방전략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환경기후변화부는 이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의 5개 전략목표 구조를 13개 전략목표 구조로 바꾸어 최종 전략을 수립하는 전향적인 대응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더욱 효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에 반영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한편, 스위스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의 수립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 목표 격인 실행영역의 하위에 중기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직접 활용한 것이다. 각각의 실행영역의 중기적 목표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단기적 목표를 하위에 둠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직접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행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유기적인 결합의 수준은 본 연구의 사례 중에서 스위스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여 제작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제시하였으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계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4개 전략을 17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하여 제시한 바 있으나 유사한 주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본계획 전략을 배분하는 수준에 그쳤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해외사례로 살펴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한국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 틀에 반영하는 방식은 캐나다와 스위스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나라들은 기존의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오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한국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프레임워크인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또한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 정부부처 차원의 5개년 기본전략이 이미 수립된 가운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이를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 부처 차원, 또는 분야별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영국이 단일부처계획(SDP)를 수립하면서 이에 유엔지속 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처럼 부처별로 각 소관 영역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의 영역에서 분야별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에 제안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정책 발굴에 있어서 스포츠 영역에 대한 정책 발굴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별 소관부처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행과제는 세 개에 불과하며 그중 두 개는 관광과 관련된 것으로 체육과 관련된 이행과제는 하나뿐이다. 아래 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행과제들을 나타낸다.

〈표 3-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행과제

	0	소관부처				
2. 통합된	2. 통합된 안심 사회					
2-1. 사호	I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 촉진				
2-1-2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 원 강화 복지부, 국토부, 문체부					
2-2. 지역	^부 간 격차 해소					
2 2 2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문체부			
2-2-3	활성화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환경부, 문체부, 해수부			

관광과 관련된 이행과제 2개를 제외하고 체육관련 이행과제를 보면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이행과제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 계층 간 통합 촉진을 통해 통합된 안심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연관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로는 '불평등 감소'가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51개의 세부이행과제 중 하나만 체육과 관련된 것임을 뜻한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 및 학계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스포츠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스포츠를 활용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정책적 간극과 더불어 정책 발굴의 기회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유엔지속

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스포츠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스포츠정책을 발굴, 제시하여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국제사회의 정책적 요구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연계하여 스포츠에 기반을 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정책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요구(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프레임워크를 접목하는 식으로 그 정책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영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17개의 목표 중 IOC가 제시한 6개 목표를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발굴하는 것이적절할 것이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 정책 제언

제1절 예시시업 1: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제2절 예사사업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제3절 예시시업 3: 스포츠 ODA를 통한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 강화

제4절 예시시업 4: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앞서 본 연구의 3장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유추,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그 방향성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IOC가 스포츠의 기여를 강조한 6개 목표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틀에 접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스포츠정책의 예시를 전문가회의를 통해 발굴, 개발하였다.

스포츠 정책 예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서술형의 기술보다는 정부의 정책 발굴 보고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예시의 전달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정책 발굴 보고서의 양식을 따라 기술, 제시하였다.

제1절 예시사업 1: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국내 및 국제 지속가능발전 의제 연계				
제3차 지속가능발전	2. 통합된 안심 사회			
기본계획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3. 건강과 웰빙			
(SDGs)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 : 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노년 인구수가 2008년 대비 218만 801 5명 증가한(3.8%p)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3802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을 넘음, 2017년 8월말 기준)
- UN이 노인연령의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설정할 정도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인연령기준도 세부화 되고 있는 실정임(65~74:young-old / 75~84:middle-old / 85이상 old-old)
- 그러나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 저조라는 내용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37%, 근력운동 실천율 18% (한국건강증진개발 원, 2017), 60세 이상 노인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40% (문화체육관광부, 2017)로 표기되어 실제 연령별 참여는 알 수 없음
- 노인의 체육활동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회복, 사회지출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세대 간 불화 극복 등 고령화로 인한 당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노인의 체육활동은 활동적 노화(active-aging)로서 건강한 신체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 잠재력을 확대시켜, 고령화문제를 사회적 성장의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임
- 노인은 병원의 단골고객이며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운동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적용은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됨
- 그러나 노인에게 운동을 제공하는 담당 및 관리 부처 모호 : 문화체육관광부(노인 생활체육/노인스포츠 등), 보건복지부(건강100세 운동 등)에서 중복된 사업실시로 인해 정책의 비효율성 및 비전문화
- 2015년부터 실시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 노인스 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노인스포츠 현장에서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의 무 발생하지 않음(배재윤, 원영신, 마윤성, 2015)
- 노인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여가복지서비스로서 다양한 체육프 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 지도자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 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노인관련 문제는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관 소관으로 체육프로그램의 선택 등도 복지사들에 의해 정해지는 현실. 수업이 많아도 일용직에 불과함.

2. 필요성

- 노인의 체육활동 증진방안 및 제반사항 마련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함.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전문화된 정책 마련 시급

3. 목표

- 노인들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운동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체계구축 및 노인을 위한 여가복지서비스 산업 기반 마련

4. 추진방법

- 사업개요: 노인체육 정책공급 체계 구축 및 산업기반 마련
-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① 노인체육 정책공급 체계 구축 : 노인체육 참여 관련 종합 실태 조사, 정책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공급 체계 재구축, 일원화된 정책 창구 마련
- ② 노인스포츠지도사 실태조사 및 제도 보안 :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강제 마련
- ③ 노인체육을 통한 산업기반 마련
 - 민간 & 대학 : 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체육 시설관리자 등을 노인 체육 기구 및 시설 공인 인증제 구축 및 시행을 통해 노인 체육 산업 육성
 - 대학 : 노인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배출된 노인인력 관리 및 교육 노인 체육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 정부 : 예산 확보 및 관리 감독, 부처 별 협력 체계 구축

제2절 예시사업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국내 및 국제 지속가능발전 의제 연계			
제3차 지속가능발전	2. 통합된 안심 사회		
기본계획	2-1. 사회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유엔지속가 능 발전목표	목표 5. 성평등		
(SDGs)	<u> </u>		

1. 추진배경

-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인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권인 데 반해 여성의 사회진출은 세계 하위 수준
-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 '2017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최신 첨단과 전통의 유교가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음.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은 많이 개선됐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별로 나아진 점이 없음.

특히 체육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함.

-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로 144개국 중 118위. 특히,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0%대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음 (OECD국가 평균 84.5%)
-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3월 각국의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여성이 받는 대우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양육비용, 간부직 내 여성 비율 등 10개 항목으로 산출. 올해에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즉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발표됨.

2. 필요성

- IOC가 스포츠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로 선정한 6개의 목표 중 '성평등' 관련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써 '체육계에서 모든 참여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참여 및 기회의 공평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목표

- ① 장기적 목표: 미국의 남녀평등 법안인 Title IX(타이틀 나인)과 같은 체육분야에 서의 남녀평등법안 마련과 제도의 시행
- ② 단기적 목표
 - 의사결정을 하는 체육단체 임원에 여성의 비율 30% 확보
 -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 등에서 여성 감독 및 코치의 비율 증가

4. 추진방법

- 사업개요: 성평등 지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고, 체육단 체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임.
- 추진방법:
- ① 체육분야 양성평등법 제정
 -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의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제정

- ② 생애주기별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 지원
 -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
 - 학교체육에서 여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및 프로그램 지원
 - "건강한 엄마, 건강한 가족" 캐치프레이즈
 - 노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한 지원
- ③ 체육단체에서 여성임원 비율 30%까지 확대
 - 대한체육회 및 산하 체육단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임
 - 전문체육에서 코치 및 감독에 여성 코치 및 감독의 비율을 높임
-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 양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아젠더 발굴
 - 양성평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와 관련 모니터링

(5) 기대효과

- 유능한 여성 인력 발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제고 마련
-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인한 선진국가로의 이미지 상승
- 전 국민이 행복한 통합된 사회 실현

제3절 예시시업 3: 스포츠 ODA를 통한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 강화

국내 및 국제 지속가능발전 의제 연계			
	2. 통합된 안심 사회		
제3차 지속가능발전	2-1. 사회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기본계획	4. 글로벌 책임국가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5. 성평등		
(SDGs)	목표 17. 글로벌 협력		

1. 추진배경

-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남성혐오 혹은 여성혐오 현상의 심화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음. 이미 남혐/여혐 인터넷 사이트 누적 참여자 수가 수십만 단위를 넘어서고 있는 사회현상의 기저에는 성차이에 대한 몰인식이 자리하고 있음.

- 성평등은 성차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통적인 스포츠 환경을 통해 성별에 따른 경기력 차이만이 부각되었던 과거의 환경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참여에 소외되었던 여성의 참여를 보장, 장려,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강 체력 증진 및 "할 수 있다"는 동기유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동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 위상은 대한민국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ODA의 궁극적인 목적을 감안할 때,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을 통해 서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ODA가 매우 필요해 보임.
-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의 유리천정은 과거의 차별적 인식과 제도의 누적에 의한 산물. 제도의 변화는 변경과 폐지를 통해 이루어지나 인식 특히 인식의 확산과 태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경과 폐지로 이루어질 수 없음. 여성 스스로의 변화 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중동, 동남아시아 및 동유럽 등의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스포츠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 강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들을 위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으로 보임.

2. 필요성

- 최근 들어 이슬람 수니파의 만형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의 운전과 참정권을 허용하려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여성 친화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전 세계 다른 이슬람 문화권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변화의 시 작점으로 생각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수만 년간을 이어온 문화가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음. 따라서 여성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인 변화의 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되어야 함.
- 그 시작은 "전인적인 변화"와 "심리적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의 다양한 연구는 "신체활동이 주는 전인적 변화에의 중 요한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신체활동을 통한 자기효능감(자존감)이나 동 기유발 등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와 뇌세포 증가 및 뇌세포간 연결 증가에 따른

창의성과 같은 고차워적 인지능력 변화에 대한 것이 그것.

- 따라서 개인적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 팀워크와 같은 정서변화와 통찰력, 창의성과 같은 인지능력 변화를 동반하는 스포츠 환경의 제공을 통해 여성 스스로의 자기주도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내딛음이 되어야 함.
- 성평등 지수가 낮은 개발도상국 여성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국가-국가" 그리고 "국가-국제기구"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상호호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ODA 프로젝트를 제안.
- 이를 위해 UN, IOC, UNESCO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국가를 위한 스포츠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개발도상 국들에서의 여성 스포츠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호혜적인 교류 및 활동을 기획, 실천하는 것이 필요.

3. 목표

- ① 스포츠에서의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성평등 실현과 여성 역량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UN, IOC, 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조직, 활동, 계획 등을 알아봄으로써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
- ② 우리나라 및 성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와 이에 반대되는 국가들의 여성 정책과 정책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함. 이를 위해 상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회의 및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고, 이들 국가 스포츠 기구 및 기타 부처와의 네트워킹 방안을 모색해야 함.
- ③ ODA 지원 국가 및 한국 사회에서 성차이가 성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변화를 장려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적인만큼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④ 개발도상국 여성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그램의 확산 방안에 대해 살펴봄.

4. 추진방법

- 사업개요

- ①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세계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
- ②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도국-대한민국〉, 〈개도국-개도국〉, (개 도국-국제기구〉, 〈대한민국-국제기구〉 간의 네트워킹 실천방안에 대한 방문, 초빙, 공동 연구의 필요성
- ③ 개발도상국 및 대한민국에서의 성불평등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초빙 및 공동 연구의 필요성
- ④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스포츠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개발 된 프로그램 및 방안의 적용을 위한 교류, 방문, 공동 실천의 필요성
- ⑤ 시행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방문, 초빙, 공동 연구의 필요성

- 추진방법

- ①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방문, 세미나, 연구 및 MOU 체결 (대한 체육회와의 공조)
- ②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 방문, 호혜적 이해, 상호 교류 및 MOU 체결 (대한체육회, 각국 NOC, KOICA와의 공조).
- ③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과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대한체육회, 여성가족부, 각국 NOC와의 공조)
- ④ 구축된 환경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대한체육회, 각국 NOC와의 공조)

제4절 예시사업 4: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국내 및 국제 지속가능발전 의제 연계			
제3차 지속가능발전	4. 글로벌 책임국가		
기본계획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목표 17. 글로벌 협력		

1. 추진배경

- 여러 국제기구나 스포츠 선진국들이 "스포츠를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점차 국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
- 아직 공식적으로 "스포츠 토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 및 개발"을 독립적 인 영역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 즉, 스포츠를 통한 발전 및 개발이 중요한 의제 이기는 하나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의 공적대외원조 (ODA)의 형태를 띰.
- 스포츠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개발의 질적인 성장과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정부, 비영리기관, 시민사회, 학계, 일반 대중 등 우리 사회의 주요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모델로 발전해야 함.

2. 필요성

- 다자간 협력을 통한 win-win-win 관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행동을 유도 하는 지식적 체계 현저히 부족. 특히, 다음과 같은 지식, 합의와 연구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
- ① 스포츠를 통한 개발에 기업의 참여는 재원분담으로 재정확충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 기업의 브랜드, 역량(capability) 효율성 (efficiency), 능력(competency), 자신감 (confidence) 등의 가치 전이(transfer)를 통해 개발과정과 결과물의 사회, 경제적 임팩트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 이로부터 기업은 혁신적 가치, 신상품 개발, 글로벌 기업시민행동 등의 사회, 경제적 목표 성취가 가능해짐.

② 다자간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사회 전체적 합의, 참여 및 투자에 대한 정당성 개발,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한 전략 개발을 통해 지식체계 구축 및 교육 파트너로서 스포츠를 통한 다자간 개발협력에 "학계 및 대학연구기관"의 선도적 역할 (leading role)이 요구됨.

3. 목표

- 스포츠를 통한 기업, 정부, 비영리기관, 학계 다자간 협력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 한 발전 지원 시스템 개발

4. 추진방법

- 사업개요: 스포츠 토대 다자간 협력 개발에 기업과 대학이 글로벌 사회공헌 및 공유가치 창출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업 개발 및 정책적 지원
- 추진방법: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사회공헌/공유가치담당부서, 비영리기관 주관 컨소시엄 형태의 스포츠 통한 다자협력개발" 사업 제안서 공모, 평가 후 시행예) 총 사업비 분담비율: 문화체육관광부 (30%) + 기업 (30%) + 비영리기관 (20%) + 대학 (20%)

- 추진체계:

- ① 스포츠를 통한 다자협력개발의 성과적 목표와 결과물의 영역은 "IOC 2015 The Contribution of Sport to the SDG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를 토대로 Health, Education, Gender Equality & Empowerment, Human Settlements, Peace 등으로 정의. 이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 (outcomes)은 대학연구기관이 표준화 및 계량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평가
- ② 파트너 기업은 계량화된 사회공헌/공유가치 결과물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경제 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모색하여, 주주 및 기업의 주요이해관계자들에 게 정당성과 합의를 찾음.
 - 예) 정책적 지원으로 기업의 다자간 협력 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계량화된 사회공헌/공유가치 결과물을 토대로 법인 세제혜택을 고려.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본격화하였다.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매 1 0주년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회의가 열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리우 선언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후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회의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제3차 계획이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대표적인 국내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교류협력 차원에서의 스포츠의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의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강조되어 왔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도 큰역할을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스포츠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 및 평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대표적으로 새천년 개발계획(MDGs)의 이행에 기여한 부분을 예로 들어 보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유효성과 범용성이 확인 가능하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엔과 IOC는 스포츠가 유엔지속가능목표 중 6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2015년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된 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자 의제 2030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단일부처계획(SDP)이라는 부처별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국무조정실이 제출된 단일부처계획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 정책 틀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영국 국제원조부는 의제 2030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개괄보고서를 작성하여 영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방식에 대한 개관과 예시를 담았다. 이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국내와 국내의 이행 예시를 담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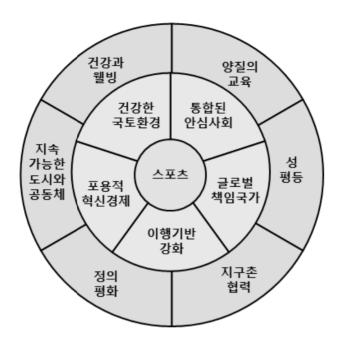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을 보여주는 주요문서는 지속가능발전 연방전략으로 이 문서는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와 관련한 정책의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환경기후변화부에서 제작하는 이 연방전략은 13개 장기목표, 25개 중기목표, 40개 단기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특징은 여론수렴 및 반영과정을 거친다는 것으로 이번 제3차 연방전략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목표를 5개에서 13개로 늘리는 등 큰 폭의 수정을 거쳤다. 캐나다는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프레임워크인 연방전략에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

표 중 12개의 목표만 직접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로 반영 한 결과이다.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은 연방의회에서 제작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016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전략 2016-19는 수립시기에 채택된 의제 2030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이를 접목하였다.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은 9개의 실행영역에 52개의 하위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중기적 과제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로 설정하여 자국의 정책 틀인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유기적 결합을 통해 스위스는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프레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을 꾀하고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 틀에 반영하는 방식을 보면 한국은 캐나다와 스위스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자국의 기존 지속가능발전 계획 또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자국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 캐나다 및 스위스와 유사하기는 하지만계획체계의 구조상 그것이 반영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틀의 장기적 목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반영의 구체성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두 해외 사례의 경우 기존 자국의 계획안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반영, 수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계획된 기본계획의 전략을 유사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배분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별 소관영역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정책프로그램을 발굴해야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달성 수단으로서 스포츠의유효성과 범용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스포츠를 활용한 이행과제가 단 1건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고 스포츠를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연계하여 스포츠에 기반을 둔 정책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정책은 6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를 안에 접목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스포츠정책 발굴은 다음과 그림과 같이 개념화될 수 있다.



〈그림 5-1〉 6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스포츠 정책 발굴 개념도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개별 국가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하는 과정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해외사례의 시사점 적용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을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영역에 따라발굴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책 방향성의 구체적인 전달을 위해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영역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목한 4개의 스포츠정책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 및 정책 예시를 참고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을 실질적으로 발굴하는 후속연구가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스포츠정책 발굴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그 논의가 주무부처, 유관부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추진체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스포츠정책이 발굴, 수립될 경우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포츠정책들의 수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를 총괄할 신규 조직의 생성 등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ppendix 1. 새천년 개발목표 이행과정에서 스포츠가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

1) YES(Youth Education throught Sport) Programme

- YES프로그램은 청년들에 의해 진행되는 스포츠 및 교육 프로그램인 YES프로그램 은 2000년부터 약 3년 간 짐바브웨의 10개 주에서 25,00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되었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학업을 계속 해야 하며,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생활기술을 배워, 스스로가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지역에 공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UNHabitat programme in Lithuania

- UN해비타트는 리투아니아에서 사회통합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공간인 레크리에이션 존(recreational zone)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 이 레크리에이션 존은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증진시켰으며, 직업교육과 실 무경험을 제공하였다.

3) Edusport Outreach International in Zambia

- Eudsport Outreach International은 넷볼, 농구, 육상, 에어로빅, 댄스, 배구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만 명 이상의 노숙어린이, 고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기술을 교육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4) Football tournaments in Georgia

- 조지아에서 정부 유관기관, 유니세프, 기업, NGO들의 후원으로 열린 지역 축구 토너먼트에 2,028개 학교로부터 46,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 이 토너먼트 경기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권장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Smoking, drinking and taking drugs can't compare to the extraordin ary high of kicking a winning goal"이라는 표제하에 진행되었다.

(United Nations, 2003)

Appendix 2. Sport's Contribution to Post-2015 Agenda: IOC Position

목표 3. 건강과 웰빙 (세부목표 3.4)

-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고혈압, 비 만, 우울증 및 골다공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비전 ● 스포츠는 건강위해요소를 다루는 다양한 수단을 염성질병(NCDs)의 1차 및 2차 예방에 있어 제 3 의 중요 요소이다.
-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신체비활동 성 비율을 10%까지 줄이기로 약속했다.
- 중국,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및 브라질만해도, 천1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직 접 비용으로 3천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 비만의 발생빈도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증가한다 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성인인구의 거의 절반정 도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포츠는 정신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며, 자존감 을 증진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절하는데 도 움을 주며, 우울증을 완화한다.
- 제공하며 여성과 여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스포 츠는 주요한 건강 정보와 교육을 공유하는 중요 한 계기를 제공하며, 여성이 성적, 생식적 건강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기회 를 제공한다.
- 신체 비활동성으로 인해 드는 비용은 2008년에 2 스포츠는 청소년과 성인에게 건강과 발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값진 정보 및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다.
 - 스포츠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들이 HIV나 기타 질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조 장한다.
 - 스포츠는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이슈인 생산성의 증대와 건강관리 비용의 절감을 돕는다.

목표 4.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4.1, 4.5)

2013년 5월 베를린에서 유네스코와 독일 정부가 주최한 체육 교육 및 스포츠 "MINEPS V"를 담당하 는 제5차 고위급 장관들과 고위 관료 국제회의에서, 교육 및 스포츠 조직 및 실무자들과 회원국들이 함 께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하였다:

-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양질의 체육교육은 모 학교 환경 밖에서는 즐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사회에 평생 참여를 위한 기술, 태도, 가치, 지식 및 이해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폭력, 성적 괴롭힘, 인종주의 및 여러 형태의 차별 | 스포츠 및 놀이 활동은 학습 성과 및 학업 이 없는 통합적 환경은 양질의 체육교육과 스포츠 의 기본이다.
- 전통적 스포츠와 게임은, 무형 유산의 일환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참여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렇 게 되도록 장려되어야한다.
- 양질의 통합적 체육교육수업은 중등 및 고등교육 에 필수 과정으로 매일단위로 하고, 학교 및 기타 모든 교육기관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이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 | • 스포츠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긍정적 태도와 가치 을 포함해야한다.
- 스포츠 시설 및 장비,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코치 를 포함하여 체육 교육 및 스포츠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스포츠 조직, 학교 및 기타 모든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 조기 발달과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 포함된 통합 과외 학교 스포츠의 중요한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야 한다.

-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방식의 학교 체육 교육, 스포츠 및 학습 활동은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하고 출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스포츠는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촉진시킨다.
- 그리고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한 표현으로서, 스포츠 및 체육교육프로그램은 팀 빌딩,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해결, 공동체의식, 자존감, 개인적 책무, 공감, 도덕적 개발, 사회회복력, 그리고 교육적 성취를 이루려는 개선 경향과 같은 개인 능력에 기반한 광범위한 삶의 기술 및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 및 도덕적 힘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목표 5. 성평등 (세부목표 5.1. 5.5)

스포츠 접근성은 1979년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CEDAW)을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문서 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 ● 학교 등록, 학교 출석륨 및 학업 수행력을 증진시 로 간주된다. 베이징 행동 강령은 세 가지 주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스포츠 및 체육교 │ ● 여성과 여아에게 전이 가능한 평생 기술 습득하여 육을 언급했다:

- 차별 없는 교육 및 후련 개발을 위해
-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예방 프로그램 강화를
- 교육, 기술 개발 및 훈련에서 소녀들에 대한 근절 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여성과 여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 들이 가능하다.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사회적 상호작용 및 우정을 위한 기회 창출
- 성적 활동을 미루고 십대 임신 수치를 낮춤으로써 여성과 여아의 자신감 증진,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통제력 제공
- 키기 위한 장려책 및 지원책 제공
- 고용 가능성 증진
- 장애가 있는 여성과 여아에게 건강 정보, 기술, 사 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리더십 경험을 얻는 권한
- 여성 및 여아가 직장, 가정 및 공동체 생활의 모 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경영, 협상 및 의사결정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 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스포츠 활동을 한 8 0%가 여성 임원이며; 69%가 직업적 성공을 거두 는데 스포츠가 공헌함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세부목표 11.7)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건강 관리 및 수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절감
- 흡연, 비행 및 폭력과 같은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범죄 발생 감소
-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줄어듦; •생산적 시 민과 근로자가 늘어남
- 오염이 줄고 녹지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짐
- 사회 네트워크 확산
- 이웃간 교류 활성화, 사회 응집력 및 공동체 정체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체 활동 및 스포츠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에 기반한, 다분야, 문화 관련 접근방식이 요구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방식 에 영향을 미치거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공 공공 스포츠 및 놀이 공간, 관련 체육 활동 및 스포 공 공간을 늘리는 정책은 인구의 스포츠 및 신체 활 츠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 동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결과 적으로 건강과 사회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한다. 이 는 모든 체제의 국가, 특히 저소득, 중산층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 알코올 및 불법 약물 남용, 보호되지 않은 성행위, 국가 및 지방 차워 특히 여성과 여아를 위한 도시, 지역 계획 그리고 환경 정책을 세우고 검토할 때 스 포츠 및 신체 활동을 이용 가능하고 안전하도록 보 장하는 것이다;

-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 놀이 시설 제공
- 근로자가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활동적 이동 수단 (예. 자전거, 도보),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전 랸 초지
- 학교 정책이 양질의 체육 교육 및 스포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

목표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세부목표 16.1)

스포츠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갈등의 시기에 ● 전쟁 희생자들이 안정감 및 정상생활을 되찾게 하 휴지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고, 갈등 집단 간 연결고 리를 만들뿐만 아니라, 분쟁 이후 평화에 기여하며, 평화의 문화를 장려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물론 스포츠만으로 갈등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 ● 스포츠는 보편성 및 대중성을 통해 사회배제집단 축할 순 없다. 그러나 스포츠는 사회, 경제, 문화적 분열을 넘어선 관계를 구축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를 불신과 적개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집단 사이에 ┃ ●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적 호소력이 평화 문화를 촉 공유된 정체성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 스포츠는 군사 동원 해제 및 군사비용 축소의 노 력을 진전시키고, 전 전투원들, 특히 전 아동 전 투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로 재통합되는 데에 지 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는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쟁 관련 외상 문제 해결 및 치료 촉진에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에게 다가가고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 하다
- 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이고도 매우 강력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형성한다. 특히 유명운동 선수는 때때로 평화를 위한 역할 모델 및 대변인 으로서 그리고 대화의 장을 열어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목표 17. 글로벌 협력

활발한 구성원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극대화된 성 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스포츠는 5개 대륙, 전 연령대 수백만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매일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결합시킨다.
- 스포츠 분야는 시민 사회에서 하나의 적극적이고 스포츠는 전 세계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에 기여하는 조직, 클럽, 협회, 기업 및 행사를 통 해 수백만의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한다.
 - 스포츠는 그것이 가진 설득력으로 공동체를 단결 시키고, 청소년을 참여시키며, 최 취약층을 도우려 노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

(Devecioglu 외, 2016)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용하 (2011).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혁신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14).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석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센터
- 박광무 (201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 비전 및 과제 수립 연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박광무 (201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워
- 손혁상 (2016).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일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 양수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출범에 따른 삼림협력 전략연구, 한국임학회
- 오수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연구,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이원희 (2007).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 활용정책 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최상적 (2010),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인재 정책방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환경부 (2014). 2014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Beutler, Ingrid (2008). Sport serving development and peace: Achieving the go als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sport, Sport in Society, 11/4, pp. 356-3 69
- Black, David R. (2009). The ambiguities of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devel opment through sport', Sport in Society, 13/1, pp. 121-129
- Devecioglu, Sebahattin (2017). Social Responsibility in Sport(Peace Ball Project), Sport & Society, 17, pp.115-120
- Devecioglu, Sebahattin, Ekenci, Guner, Yildiz, Mustafa (2016). Global Goals: Yo uth and Sport, Sport & Society, 16, pp.102-111
- Dudfield, Oliver (2015).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nd the 2030 Agend 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mmonwealth
- Girginov, Vassil & Hills, Laura (2009). The Poilitical process of constructing a s ustainable London Olympics sports development legacy, International Journ al of Sport Policy, 1/2, pp. 161-181

- Linsey, Iain (2007). Conceptualising sustainablity in sports development, Leisur e Studies, 27/3, pp. 279-294
- Schulenkorf, Nico (2012).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sport an d even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Sport-for-Development projects, Sport Management Reivew, 15/1, pp. 1-12
- DCMS (2008).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Sustainable Devel opment Action Plan 2008-2011
- DCMS (2016) DCMS Single Departmental Plan: 2015-2020
- DECC (2016)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Single Departmental Pla n: 2015 to 2020
- DFID (2016)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ngle Departmental Pla n: 2015 to 2020
- DFID (2017). Agenda 2030: The UK Government's approach to delivering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 Environment Canada (2011). Progress Report for the Federal Sustainable Develo pment Strategy 2010-2013
- Environment Canada (2013). Systhesis Report: Public Consultations on the Draft 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3-2016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2016). A Federal Sustainable Develop ment Strategy for Canada 2016-2019: Consultation Draft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2016). A Federal Sustainable Develop ment Strategy for Canada 2016-2019
- House of Comm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2016). UK Impleme 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irst Report of Session 201 6-17
- House of Comm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2016). UK Impleme 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First Report of Session 2016-17 Fourth Special Report of Session 2016-17
-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2017). Sustainable Develo pment Goals in the UK Ninth Report of Session 2016-17
- IOC (2015). The Contribution of Sport to the SDGs and the Post-2015 Develop ment Agenda the IOC Position
- Swiss Federal Council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6-2019 United Nations (1992). Agenda 21

United Nations (1992).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02).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02).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 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03).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h: Towards Achieving t 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2012). The Future We Want

United Nations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 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16). Final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 icators

UNDESA (2012). A Guidebook to the Green Economy

UNOSDP (2015). 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A nnual Report 2014

[2017년도 연구과제 목록]

♦ 기본과제 * 현안과제 8건 포함

	도 서 명	책임연구자
1	도시개발 제도 개선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 연구	김미옥
2	성공적인 스포츠클럽 운영 모델을 위한 기초연구	남상우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실태 분석연구	노용구
4	스포츠클럽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성문정
5	장애인스포츠·레저학교 설치운영 방안 연구	성문정
6	지속기능발전목표(SDGs)연계 스포츠 시사성 탐구 연구	조현주
7	유·청소년 스포츠정책 방향 및 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	정현우
8	손목 밴드형 웨어러블 기기 활용을 통한 여성노인의 간헐적 운동중재 효과	박세정
9	심박변이도를 활용한 불안과 운동수행력간의 관계 검증	황승현
1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개선 방안 연구	고경진
11	스포츠경기서비스업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방안 -종목 중심으로-	김민수
12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운영 개선방안(비공개)	김미숙
13	유도 메치기(당기기)용 벡터측정장치 개발(비공개)	길세기
14	한국형 운동능력별 엘리트선수의 체력 SNP 비교 -대규모 SNP Case-Control 연구-(비공개)	김광준
15	우수 양궁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선수 의사소통 요인 탐색(비공개)	김영숙
16	엘리트선수들의 ACTN3, AGTR2, PGC-1 α 유전자 다형의 비율 및 운동능력과의 관련성 (비공개)	민석기
17	엘리트 육상 단거리 선수들의 대요근과 전문체력의 관계(비공개)	성봉주
18	빙상/슬라이딩 종목 경기 장비 연구시설 아이스챔버의 온도/속도센서 교정 및 얼음 표면 가공 조건 연구(비공개)	이상철
19	혁신형 스포츠전문 교육기관 설립 기초연구(비공개)	정지명
20	오버헤드 운동선수들의 운동 유발성 어깨 통증 유무에 따른 어깨뼈(견갑골) 움직임 비교 분석(현안과제)	박종철
21	스포츠 부문 일자리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현안과제)	김상훈
22	스포츠산업 서비스R&D 활성화 방안 연구(현안과제)	김상훈
23	태권도선수의 무릎관절 탄성능력에 따른 하지관절 특성분석(현안과제, 비공개)	김태완
24	엘리트 유도선수의 심리적 강점 측정도구 개발연구(현안과제, 비공개)	박상혁
25	체조 마루 종목 공중 비틀기 턴 연결동작 완성도 평가(현안과제, 비공개)	송주호
26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인성발달 프로그램 활용 지침서 개발(현안과제, 영문판)	노용구
27	2016 한국의 체육지표(현안과제, 기배포)	정지명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임연구자
1	2016 체육백서 발간 사업	노용구
2	2017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종합 평가 용역	한태룡
3	2017 레슬링 국가대표[그레코로만형] 과학적 훈련 지원 및 분석 -2018 자카르타아시안게임 및 2020 동경올림픽대비	송홍선
4	2017 상임심판 운영	김미숙
5	2017-2018 꿈나무선발 및 경기력 향상도 측정 평가	김광준
6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	송홍선
7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정현우
8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대비 여자 유도 굳히기 기술 분류 및 대응전술 동영상 개발	김태완
9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프리스타일스키 슬로프스타일/하프파이프 기술훈련 지원	박종철
1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골드프로젝트	민석기
11	2018 평창동계올림픽 페럴림픽레거시 발전모델 수립연구	조현주
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페럴림픽레거시 지속가능발전 방안 제시	조현주
13	2018 평창올림픽 대비 바이애슬론선수 심폐지구력 강화 훈련프로그램개발 및 적용효과	성봉주
14	2018 평창올림픽 대비 아이스 환경조건이 컬링 스위퍼에 미치는 생체역학적 영향 분석	김태완
15	2018 평창올림픽 대비 컬링 샷 정확도 향상을 위한 압박형 훈련장비 개발	길세기
16	2018 평창올림픽 대비 컬링 선수들의 경기 중 역경상황과 대처전략 탐색	김영숙
17	2020 도쿄올림픽 대비 양궁 주의 집중 훈련을 위한 우수 양궁 선수들의 시각탐색 특성분석	김영숙
18	2020 동경올림픽 대비 체조 도마 종목 신기술 가능성 탐색	송주호
19	2020 동경올림픽 및 그 이후 올림픽 대비 차세대 역도선수 스포츠과학적 육성지원	송주호
20	경기력분석을 위한 운동역학 현장 지원방안 개발	김태완
21	구기종목 실시간 경기분석 코드 개발 -핸드볼, 하키 종목을 중심으로	박종철
22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쇼트트랙 시뮬레이션 후 생리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	김언호
23	국가대표 선수 체력 측정 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종 에르고메타 간 측정 데이터 변환방법 연구 -육상중심으로	이상철
24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손상예방 가이드북 개발	김언호
25	국민체력100 체력측정항목 기준검증및 추가 항목 개발	송홍선
26	국민체력100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성과 연구	박세정
27	근대5종 중장기 발전 방안	김미숙
28	동계빙상 스포츠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아이스챔버 고도화 컨설팅	이상철
29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김대희
30	루지경기력 향상을 위한 곡선구간 영상 획득 장치 기능구성 컨설팅	황승현
31	병역법상 체육요원 제도개선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김대희
32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및 홍보물 개발	김양례

	도 서 명	책임연구자
33	수영에서 피부색 변화를 활용한 심박수 측정 가능성 검토	민석기
34	스포츠산업 가계지출 조사	김상훈
35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성과추적 평가	김민수
36	스포츠산업백서	김민수
37	실내테마파크형 스포에듀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스포츠기술정보 제공	길세기
3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대비 사격 경기시 정서적 변화와 대응하는 심리적 안정화 전략 방안	박상혁
39	전국축구장 인프라현황 시범조사 연구 -Division 7 리그 홈 경기장 현황 조사	길세기
40	전국축구장 인프라현황 시범조사 연구 -k 리그/K3리그/N 리그 구단 홈 경기장 인프라 현황 조사	이상철
41	전통 무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김대희
42	제23기 경륜선수후보생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김언호
43	제3차 장애인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김권일
44	조정 스컬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지침서 개발 -체력 훈련 중심으로	김영수
45	종목별 경기력 결정 체력 요인 분석	김언호
46	종목별 상임심판 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김미숙
47	종목별 체력훈련 프로그램 개발	성봉주
48	지역스포츠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스포노믹스육성사업	고경진
49	지역스포츠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정지명
50	지역스포츠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육성	김민수
51	천연약용식물 추출 액상차 섭취가 엘리트선수들의 체력 및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	성봉주
52	체육분야 문화비전 연구용역	유지곤
53	체육시설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체육시설법령 개정안 수립 연구	성문정
54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한태룡
55	컬링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톤 이동속도 측정 및 시현장치 기능구성 컨설팅	김태완
56	태권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태권도 경기와 저항성 운동의 내분비계 변화에 대한 연구	김언호
57	태권도 진흥을 위한 2030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조현주
58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 전략 연구	조현주
59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골드프로젝트	송주호
60	평창올림픽 대비 모글 스키 선수들의 자기통제기술 강화를 위한 바이오피드백훈련 적용	황승현

【 2016년도 연구과제 목록 】

 ❖ 기본과제
 * 현안과제 15건 포함

	도서 명	책임연구자
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활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김미숙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심판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김미숙
3	기금지원 체육시설 이용실태 및 향후 추진방안	김미옥
4	민간자유업 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김미옥
5	스포츠 교육연수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김미옥
6	엘리트-생활체육대회 통합운영 방안	성문정
7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개발	송명규
8	부상 엘리트 선수를 위한 컨디셔닝 센터 체계화 방안	서태범
9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수요분석	김민수
10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김상훈
11	대한체육회「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방안 연구(비공개)	김대희
12	국가 체육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비공개)	성문정
13	국제체육교류진흥재단 설립 기본 타당성 연구(비공개)	조현주
14	장애인은퇴선수 취업실태 및 일자리 지원방안(비공개)	한태룡
15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현안과제)	김대희
16	지방자치단체「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제정안 연구(현안과제)	김대희
17	개발도상국 분쟁지역 청소년대상 스포츠프로그램(KISS-HOPE) 효과 검증(현안과제)	노용구
18	체육인재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현안과제)	조현주
19	하퇴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후의 주상골 하강과 족저압 비교 분석(현안과제)	박종철
20	윈게이트 기기별 파워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통한 상호변환 추정식 개발(현안과제)	성봉주
21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연령에 따른 체격, 체력, 골연령 관계성 연구(현안과제)	송홍선
22	엘리트 펜싱선수 손상실태 조사(현안과제)	정진욱
23	왕복달리기용 고정밀도 무선측정방법 개발(현안과제, 비공개)	길세기
24	세계빙상연맹(ISU) 기준에 따른 쇼트 트랙 빙상용 안전매트에 대한 무게 추 낙하 충격 시험(현안과제, 비공개)	이상철
25	적외선과 영상을 이용한 사격 조준선 정렬 훈련 장비 국산화 기초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이상철
26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몸통호구 충격흡수 성능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황종학
27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추진방안(현안과제, 비공개)	고경진
28	한국 체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현안과제, 비공개)	남상우
29	2015 한국의 체육지표(현안과제, 기배포)	정지명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임연구자
1	2015 대통령 국무총리기(배) 대회 평가 연구	 김양례
2	2015 스포츠산업백서	김민수
3	2015 체육백서	노용구
4	2016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정현우
5	2016 리우올림픽 대비 체조 도마 종목 YANG Hak Seon 기술에 대한 최적화 방안 탐색	송주호
6	2016년 꿈나무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 평가	김광준
7	2016년 꿈나무선수 선발 측정평가	김광준
8	2016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평가	한태룡
9	2016년 리우올림픽 대비 맞잡기 특이적 훈련프로그램이 여자유도 주요선수들의 전문체력 및 상지근력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태완
10	2016년 리우올림픽 대비 여자하키 주요경쟁국가 경기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박 종 철
11	2016년 리우올림픽을 위한 컨디셔닝 지침서	민석기
12	경북ICT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상훈
13	국가대표 컬링팀을 위한 팀빌딩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김영숙
14	국민체력100 - 국민체력실태조사와 국민체력100 사업의 연계방안 보고서	박세정
15	국민체력100 - 한국성인 및 노인의 건강체력 기준제시	박세정
16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의 다원화 방안	유지곤
17	권총 및 소총 사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합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 탐색	박상혁
18	동계스포츠 경기력 항상을 위한 공기저항 3%이상 저감시키는 인체공학적 플랫폼 섬유 소재 및 프리미엄급 응용제품 개발(3차년도)	문영진
19	동계스포츠 종목 선수들의 심리적 모멘텀 요인 탐색(인지-정서-생리적 변화)	박상혁
20	리우올림픽대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최규정
21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의 스타트타임 및 기록 향상 전략 수립	민석기
22	상임심판제도 운영	김대희
23	쇼트트랙 선수들의 근기능 강화 훈련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근력 및 근파워 비교 연구	김언호
24	수영운동시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안 도출	박세정
25	수영운동인식기 성능 검증 및 운동지표 도출	민석기
26	스마트아령 운동기구 개발	황종학
27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발간 연구 스포츠 경기력 향상 IoT 서비스 개발 컨설팅	김대희
28	제1세부 동계 빙상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아이스 쳄버 구성	이상철
29	제2세부 루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IoT 박스 개발	길세기
30	제3세부 루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VR(Virtual Reality) 이미지 트레이닝의 활용 방법	황승현
31	제4세부 스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문 개발	박종철

	도서명	책임연구자
32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운영 실태조사	고경진
33	스포츠안전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황종학
34	스포츠용품 인증기관 지정 도입 및 육성 방안	길세기
35	스포츠용품제조업 총조사	김상훈
36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 스타트 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	송주호
87	승마형 운동기구(마렝고휘트니스)의 공학적 알고리즘 연구	황종학
8	승마형 운동기구(마렝고휘트니스)의 운동시 에너지소비량 및 운동효과 분석	성봉주
39	심박변이도를 활용한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들의 각성조절 호흡법 개발 및 적용	황승현
10	안전관리 우수체육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유지곤
4 1	야외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황종학
12	양궁 리커브 선수들을 위한 리우 경기장 적응 시뮬레이션 훈련 개발 및 적용	김영숙
13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 개선 방안	정진욱
4	올림픽공원 올림픽 컨벤션센터 중장기 활용 방안	노용구
15	장애인스포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현우
6	전국 종합운동장 스포츠허브(가칭) 조성 모델개발	김미옥
7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모니터링 연구	노용구
8	제22기 경륜선수후보생의 경주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서태범
9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심리평가 기준 개발	황승현
0	체력단련시설 운영 실태조사	정지명
1	체육시설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 및 안전교육 제도화 방안 수립	김미옥
2	초등학교 운동선수 체력 훈련지원 지침서(유소년용)	송홍선
3	초등학교선수용 스포츠과학센터 측정평가 도구 개발	성봉주
54	컬링 브러쉬 잡기 위치에 따른 효율적 스위핑 기술 분석	김태완
5	태권도선수의 근기능 강화 체력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언호
6	통합백서	김대희
7	펜싱 사브르 훈련용 반응시간 측정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길세기
8	프리스타일스키 공중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분석	박종철
59	한국형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김대희
50	해외 올림픽레거시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조현주

[2015년도 연구과제 목록]

♦ 기본과제 * 현안과제 17건 포함

	도서 명	책임연구자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김양례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	김미옥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방안	김미옥
4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등록규정 개선방안 연구	김대희
5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노용구
6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	조현주
7	학교운동부의 학교급간별 적정 운동시간 설정을 위한 연구	김언호
8	시장분석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상훈
9	성과분석에 기반한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개선방안	김민수
10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대회 실태 및 개선방안(비공개)	김미숙
11	전국체육대회운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비공개)	한태룡
12	뉴로피드백을 활용한 심상 훈련의 적용(비공개)	김영숙
13	골프 유사회원권 시장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비공개)	정지명
14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현안과제)	김대희
15	스포츠도시 선정 평가지표 개발 연구(현안과제)	김미옥
16	일본 학교체육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현안과제)	한태룡
17	고강도 저항성운동과 저강도 저항성운동이 동맥경화도에 미치는 영향(현안과제)	김언호
18	2015년도 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체력 향상도 분석(현안과제)	박세정
19	투기 종목 선수들의 스포츠 용기 구성 개념 탐색(현안과제)	박상혁
20	스포츠심리 현장지원을 위한 심박변이도(HRV) 활용방안에 관한 문헌 연구(현안과제)	황승현
21	스포츠영상분석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현안과제)	박종철
22	아시아 수영선진국의 지원시스템 분석 및 비교(현안과제)	민석기
23	학교체육 거버넌스 운영조직 설립방안(현안과제, 비공개)	한태룡
24	개발도상국 청소년대상 스포츠 프로그램(KISS-HOPE)효과 검증(현안과제, 비공개)	노용구
25	국제무예센터(가칭) 건립 기본구상(안)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유지곤
26	3m 스프링보드 다이빙 109C형 기술 완성도 평가(현안과제, 비공개)	김태완
27	체조 도마 종목 Ri Se Gwang 기술에 관한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송주호
28	역도 인상 동작 시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상 관련요인 평가(현안과제)	문영진
29	한국스포츠개발원 체력 측정 및 평가 매뉴얼॥(현안과제, 내부용)	김영수
30	2014 한국의 체육지표(현안과제, 기배포)	정지명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임연구자
1	2014 대통령기(배) 대회 평가	김양례
2	2014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평가	김권일
3	2014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 연구	김대희
4	2014년 체육백서 발간 사업	김미숙
5	2014년도 꿈나무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평가	김광준
6	2015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김양례
7	2015 꿈나무선수 선발 측정평가	김광준
8	2015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조현주
9	2015년 국민체력실태조사	성봉주
10	2015년 우수영재 육성사업 스포츠과학 측정의뢰	최규정
11	2015년도 꿈나무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평가	김광준
12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홍보측정과 전략관리	김민수
13	S Health의 운동 사용성 평가 및 개선	정진욱
14	S Health의 운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정진욱
15	S Health의 운동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	정진욱
16	강릉 동계종목 선수훈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유지곤
17	국민체력100 - 대체항목 개발	정진욱
18	국민체력100 - 평가기준 개선	고병구
19	국민체력100 - 한국성인의 스포츠활동 평가 도구 개발	고병구
20	국민체력100 - 한국인 건강체력 기준개발(2차년도)	박세정
21	국민체력100사업과 건강증진사업 협업 및 차별화 전략 방안	김양례
22	국민체력100 - 스포츠활동 인증가이드북	송홍선
23	국제체육 아젠다 발굴 기획 사업	조현주
24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성문정
25	늘품체조 효과성 평가 분석	서태범
26	동계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기저항 3%이상 저감시키는 인체공학적 플랫폼 섬유 소재 및 프리미엄급 응용제품 개발(2차년도)	문영진
27	부산경정사업 타당성 조사	유지곤
28	사용자 활동량 기술 개발	박세정
29	상임심판 제도 운영	김미숙
30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발간 및 보급	김대희
31	스포츠무형자산가치 평가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정지명
32	스포츠산업 소비자 가계지출 조사	김상훈

	도 서 명	책임연구자
33	장애인국제대회 연금지급방안 컨설팅 연구	김권일
34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이구 부문)	김상훈
35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축구 부문)	최용석
36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농구 부문)	김민수
37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배구 부문)	정지명
38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야구)	김상훈
39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축구)	최용석
40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농구)	김민수
41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배구)	정지명
42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유지곤
43	체육주간 및 체육의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노용구
44	통합DB구축 및 측정항목 개선-체육영재 및 중고 학생선수의 통합 관리를 위한 연계방안 연구	최규정
45	통합DB구축 및 측정항목 개선-체육영재 발굴프로그램	고병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기간행물 안내

□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은 체육정책, 스포츠과학, 스포츠사업부야 등 최시 체육정보를 폭넓게 소개하는 체육전문잡지입니다.



○ 발행일 : 2, 5, 8, 11월 말일(계간)

ㅇ 1년 구독료 : 20,000원 * 낱권 6,000원

○ 구독신청 :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국내 최고의 체육종합학술지입니다.



○ 발행일 : 3, 6, 9, 12월 말일(계간)

ㅇ 낱권구독료 : 10,000원(2018년 이전 발간 과월호)

○ 구독신청 :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 29권1호(2018년 3월 31일) 발행부터 저자춬판 됩니다.

□ IJASS

『JASS』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체육종합 영문학술지입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

o 발행일: 6,12월 말일(반년간)

ㅇ 낱권구독료 : 10,000원(2018년 이전 발간 과월호)

ㅇ 구독신청 :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30권1호(2018년 6월 30일) 발행부터 전자출판 됩니다.

□ SI포커스

스포츠신업 동향에 대한 부문별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포츠산업 인식 분석	(제2017_1호)
국내외 프로스포츠 방송 중계권 시장 동향 분석	(제2017_3호)
스포츠산업 실태 및 인적자원 구조 변화 분석	(제2017_4호)
국내 태권도산업 수요현황 진단 분석	(제2017_5호)
국내 배드민턴산업 수요 분석	(제2017_6호)
국내 자전거산업 수요 분석	(제2017_7호)
국내 당구산업 수요 분석	(제2017_8호)
국내 태권도산업체 조직실태 분석	(제2017_9호)
국내 배드민턴산업체 조직실태 분석	(제2017_10호)
국내 자전거산업체 조직실태 분석	(제2017_11호)
국내 당구산업체 조직실태 분석	(제2017_12호)

□ 이슈페이퍼

스포츠신업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성장에 필요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가상현실 기반 스포츠 테마파크! 평창 동계올림픽 사후 경기장 활용의 시작	(제2017_1호)
뜨거워지고 있는 한국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 이대로 좋은가?	(제2017_3호)
스포츠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과 보완점	(제2017_4호)
스포츠의 또 다른 융·복합가치 : 스포츠 연계 금융상품의 현황과 시사점	(제2017_5호)
스포츠 산업의 관점에서 본 FIFA U-20월드컵 가치와 효과는?	(제2017_6호)
국내 승미산업의 주역! 유·청소년 승마의 현재와 미래 : 국내 승미산업의 Key Word	(제2017_7호)
정책의 사각지대, 해양스포츠산업의 현황 및 전문인력양성 방안	(제2017_8호)
개인적 일탈과 나비효과 : 심판과 구단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프로야구의 위기	(제2017_9호)
3x3농구의 활성화와 농구 산업의 확장	(제2017_10호)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도시브랜딩	(제2017_11호)
국내 스키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제2017_12호)

^{*} SI포커스 및 이슈페이퍼 다운로드 : 스포이즈 홈페이지(spois.kspo.or.k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스포츠 시사성 탐구 연구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처:한국스포츠개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 02)970-9588 www.sports.re.kr

인쇄처:(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편집디자인:아하디자인